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37-01

최종보고서

#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및 실행방안 연구

2012. 7.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및 실행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류 정 곤

연 구 진 : 강 종 호

임 경 희

정 명 화

이 승 진

---

---

# 목 차

I. 서 론	1
II.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분석	5
1.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5
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6
1)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6
2) 재원조성	10
3) 운용현황	13
3. 수산발전기금 재원 조성의 한계 및 문제점	17
1) 기금의 재원 조성의 문제점	17
2) 안정적 재원의 확보 문제	18
III. 신규재원별 도입 가능성 검토	21
1. 수산물 수입관세	21
1) 수입관세 현황	21
2) 농수산물 수입관세의 기금 편입 사례	25
3) 수산물 수입관세의 수발기금 편입 필요성	27
4) 수입관세의 편입 방안	29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30
1) 현황 및 문제점	30
2) 공매처분금 수발기금 귀속 가능성	32
3) 수발기금 도입 방안	32
3. 불법어업 담보금	33
1) 불법어업 담보금(중국어선) 현황	33
2) 담보금의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36
3) 담보금 귀속 방안	38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40
1) 현황 및 문제점 .....	40
2)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	45
3) 수발기금 도입 방안 .....	46
5. FTA기금 전입금 .....	49
1) FTA 관련 기금 및 사업 현황 .....	49
2) FTA기금의 수발기금 귀속 당위성 .....	51
3) FTA기금 수발기금 귀속 방안 .....	52
6. 감척어선 매각대금 .....	54
1) 어업구조조정사업 현황 .....	54
2) 감척어선 매각대금의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및 방안 .....	56
7. 수산자원이용부담금 .....	58
1) 현황 및 문제점 .....	58
2) 수산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당위성 .....	71
3) 수산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및 수발기금 편입방안 .....	71
8. 농특세 확대 .....	73
1) 농특세 현황 .....	73
2) 레저세(경정경주) 농특세의 수발기금 편입 필요성 .....	82
3) 레저세(경정경주) 농특세의 수발기금 편입 방안 .....	83
9. FTA 수산물공매납입금 .....	84
1) 관세율할당제도 .....	84
2) FTA별 수산물관세율할당 현황 .....	85
3) 수산발전기금 확대 방안 .....	90
IV.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	93
1. 재원조성의 비전 및 목표 .....	93
1) 재원조성의 필요성 .....	93
2)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조성 비전 및 목표 .....	96
2. 수발기금 재원조성 추진방안 .....	99

---

1) 개요 .....	99
2) 추진방향 .....	101
3) 시나리오별 신규재원 규모 추정 .....	103
V. 결 론 .....	107
참고문헌 .....	109

## 표 목 차

<표 2-1>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	7
<표 2-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종류(최근 3년) .....	9
<표 2-3>	수산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	11
<표 2-4>	신규편입추진 재원 .....	12
<표 2-5>	수산발전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2011년) .....	13
<표 2-6>	기금별 여유자금 현황 .....	16
<표 2-7>	2012년 운영계획기준 기금의 운용규모 .....	17
<표 2-8>	수산발전기금 수입현황 .....	19
<표 2-9>	수산발전기금 지출현황 .....	19
<표 3-1>	수산물 수입관세율(관세법 별표1) .....	21
<표 3-2>	관세징수액의 추이 .....	22
<표 3-3>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추이 .....	23
<표 3-4>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증감 추이 .....	24
<표 3-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 .....	25
<표 3-6>	수입수산물의 연도별 누적성장률(CAGR) .....	27
<표 3-7>	수입관세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29
<표 3-8>	IUU 단속 어선·어구·어획물 공매처분금 추정액 .....	32
<표 3-9>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	33
<표 3-10>	유형별 위반어선 척수 및 담보금 징수 현황 .....	34
<표 3-11>	불법어업 담보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39
<표 3-12>	시도별 유어장 지정현황(2010년 12월 기준) .....	40
<표 3-13>	2010년 하반기 낚시어선 규모별 신고 척수 .....	42
<표 3-14>	낚시산업의 규모 추정(2008년 기준) .....	43
<표 3-15>	낚시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 관련 사항 .....	44
<표 3-16>	낚시장소에 대한 법률 및 관련 현황 .....	44
<표 3-17>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련 수수료 .....	45

<표 3-18>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48

<표 3-19> 수산분야 FTA사업 현황 ..... 51

<표 3-20> FTA기금 전입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53

<표 3-21> 어선 감척기본계획 및 어선감척 시행계획 ..... 54

<표 3-22> 연도별 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 ..... 55

<표 3-23>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정산현황 ..... 56

<표 3-24> 감척어선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57

<표 3-25>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 58

<표 3-26> 수산자원조성금의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60

<표 3-27> 지자체 부담금의 징수실적 ..... 60

<표 3-28> 부담금 징수원별 대비 실적 ..... 61

<표 3-29> 오염총량초과부담금 산정방법 및 기준 ..... 62

<표 3-30> 초과배출부담금 부과금액 ..... 64

<표 3-31> 해양폐기물 부담금액 ..... 66

<표 3-32> 해양오염물질 부담금액 ..... 67

<표 3-33> 우리나라 발전설비 증가 추이 ..... 68

<표 3-34> 발전단위별 온배수 배출현황 ..... 69

<표 3-35> 수산자원이용부담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72

<표 3-36> 농특회계의 사업 내용 ..... 74

<표 3-37>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입예산 내역 ..... 74

<표 3-38>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출예산 내역 ..... 75

<표 3-39> 농안기금 수입내역 ..... 76

<표 3-40> 축산발전기금 수입내역 ..... 76

<표 3-41> 쌀보전 직불금 수입내역 ..... 76

<표 3-42> FTA 이행지원기금 수입내역 ..... 76

<표 3-43> 농지관리기금 수입내역 ..... 77

<표 3-44> 수산발전기금 수입내역 ..... 77

<표 3-45> 농업재해보험기금 수입내역 ..... 77

<표 3-46>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금 비교 ..... 78

<표 3-47>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금 진출금 현황 ..... 78

<표 3-48> 농어촌특별세 계정의 세입·세출 현황 .....	79
<표 3-49>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분야별 예산 현황 .....	79
<표 3-50> 수산분야 농특회계 사업 예산현황 .....	80
<표 3-51> 수산분야 일반 및 광특회계 사업 예산현황 .....	81
<표 3-52> 경정경주 관련제세 .....	82
<표 3-53> 경정경주 농특세의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	83
<표 3-54>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율할당물량 .....	85
<표 3-55>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	86
<표 3-56>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	87
<표 3-57>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	87
<표 3-58> 수산물공매납입금 징수 실적 .....	89
<표 3-59> 우리나라의 협상중인 FTA 대상국 .....	91
<표 3-60> 수산물공매납입금의 수산물발전기금 재원 추정액 .....	91
<표 4-1> 수산물발전기금 장단기 사업개편(안) .....	95
<표 4-2> 수산물발전기금 신규 및 기존재원 확보 방안(총괄) .....	100
<표 4-3>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3대 추진전략별 재원 .....	101
<표 4-4> 시나리오별 단계별 신규재원 확보 전략 .....	102
<표 4-5> 시나리오별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 .....	103
<표 4-6>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낙관론) .....	104
<표 4-7>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보통) .....	105
<표 4-8>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비관론) .....	106



## 그림 목 차

<그림 2-1> 수산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	12
<그림 2-2> 신규 편입 자원 (2014년과 2016년) .....	13
<그림 2-3> 경상사업 부문(2011년 기준) .....	14
<그림 2-4> 용자사업 부문(2011년 기준) .....	15
<그림 3-1> 우리나라 낚시터 및 유어장 분포도 .....	41
<그림 3-2>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의 수발기금 도입 방안 .....	47
<그림 3-3> 수산발전기금 귀속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추정 자원 .....	47
<그림 3-4> 농어촌특별세의 연도별 징수 추이 .....	73
<그림 3-5> 공매납입금 징수실적 .....	89
<그림 4-1> 수산발전기금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97





## 요 약

### I. 서론

-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부문에 설치된 유일한 기금으로, 신수산정책에 맞춘 수산발전기금 역할의 전환·확대 및 변화된 사업에 합당한 신규재원의 도입·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원조성액 증가세가 줄어들고 또한 자체수입 재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의 축소 등으로 기금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신규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입재원의 감소(해양환경개선부담금 축소) 등으로 수산발전기금조성계획(수정안)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신규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정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발전기금 규모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신규재원(안)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함께 세부 실행 방안(연차별 추진 방안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중장기적으로는 수발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신수산정책의 비전에 합당한 신규재원을 발굴하고자 함
  - 한편 이의 효율적 편입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

## II.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분석

-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기금 설치 당시 5가지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8개의 경상사업과 24개의 용자사업으로 성장하였음
  - 기금운용 초기에는 어업경영자금 용자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안기금의 이관을 계기로 예산지원 방향을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과 수산물가공업의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해양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어업기자재 생산 촉진, 원양어업 육성 등으로 구분됨
  -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용자사업으로 구분됨

### 1.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 기금의 주요 사업은 지원형태나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지원형태 기준으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용자사업으로 구분됨
  -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해양환경보전,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경영지원,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용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관련 기금수입원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 생태보전 협력금, 해양 심층수 이용부담금, 수산물공매납입금은 해양환경보전사업을 위한 경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은 성격에 따른 회계 재조정되었음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종류(최근 3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양환경 보전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해양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연구		
	다기능 청소선 운영지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 개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비축사업	비축사업	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출하조절사업	출하조절사업
	수산동물질병관리 (경)수산동물질병관리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수산 경영 지원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양식어업지원	양식어업지원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발		
			영어자금융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소득보전직불금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활어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구입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순환어과식양식시설지원	
	생계소득 및 안정	생계소득 및 안정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기금·용 자)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	해외수산시설투자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합 계	총 28개 사업	총 21개 사업	총 16개 사업

- 수산발전기금은 2011년 말 현재 누적 8,725억 원으로 2001년 수산발전기금의 조성액 262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38% 증가하였음
  - 이는 해양환경개선 부담금('03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05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시('06년), 수산물공매납입금('07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08년)등 신규재원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가 원인임
- 2011년 기준으로 총 조달규모 6,621억 중 81%가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약 8%, 여유자금회수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수입 중 융자원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 재원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수산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달	○ 정부출연금	20,000	-	24,860	5,500	-
	○ 공자기금예수금					51,000
	○ 민간출연금(컨공단)					
	○ 자체수입	500,974	507,345	512,049	523,317	538,863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6,208	21,591	12,144	8,175	6,617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42	4,321	6,908	6,507	8,202
	- 수산물공매납입금	4,123	6,262	8,493	10,140	12,548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67	62	70	101
	- 감척어선 매각대금		1,771			-
	- 어항토지매각대금		1,170	561	2,131	718
	- 융자원금회수금	439,087	431,319	445,802	464,093	470,827
	- 이자수입 등	17,462	19,514	18,606	19,278	23,633
	- 수산물판매수입	10,976	14,121	13,699	9,541	11,116
	- 면허료 및 수수료	12,376	7,209	5,774	3,382	4,983
	- 기타 수입					118
○ 여유자금 회수	83,882	83,648	62,667	46,763	72,280	
합 계(운용액, 운용규모)	604,856	590,993	599,576	575,580	662,143	
운용	○ 사업비	519,972	527,020	551,514	499,465	550,822
	- 경상지출	29,715	41,673	68,809	40,380	49,503
	- 융자지출	490,257	485,347	482,705	459,085	501,319
	○ 기금관리비	402	385	390	402	432
	○ 사업운영비	834	921	909	842	1,016
	○ 공자기금예탁금이자상환					727
	○ 여유자금 운용	83,648	62,667	46,763	74,871	107,662
	○ 한은예치국고금					1,484

- 수산발전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2016년까지 기금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무관세수산물에 대한 이익 부과금, 원양어업 및 중국어선, 연근해 어선 등에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공매처분금, 저가수입수산물 허위신고액의 기금 편입을 계획하고 있음

[신규편입추진 재원]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190	286	476
1	무관세수산물이익부과금	150	200	380
2	불법어업(IUU) 단속어획물공매처분금	40	53	60
3	저가수입수산물허위신고액	-	33	36

- 수산발전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6,621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5,5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액 편성되었음
  - 경상사업과 융자사업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2011년 전체 운용규모의 83.2%를 차지하고 있고, 여유자금운용이 약 16.3%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경상사업 총 지원비는 495억 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비축사업이 경상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35.3%)을 차지하고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사업(25.1%)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21.4%)이 그 뒤를 이음
  - 2011년 기준 경상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은 98%를 기록함
-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기준으로 약 5,013억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수산물가격안정사업에 2,419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 융자사업의 48.3%를 차지하였음
- 수발기금의 5년 평균(2007~2011년)의 여유자금액은 평잔 기준 698억 원이고 평균수익률은 4.61%임
  - 이는 농축수산물 관련 기금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재해기금, 농지기금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임

- 향후 자산배분을 통한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2016년까지 연 6% 수익률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

## 2. 수산발전기금 재원 조성의 한계 및 문제점

###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의 문제점

- 2012년 기준 기금별 재원의 비교를 보면 수산발전기금은 6,790억 원으로 기금사업 중 4번째를 차지하는데, 이는 종합적인 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액이 적은 편으로 향후 설정될 장기적으로 발전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장 개방 등에 대응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인 식품산업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수산물 시장이 점차 개방되는 가운데 현재 기금의 사업과 같은 보조금 지급·용자 지원형태의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재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② 안정적 재원의 확보 문제

-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설치 당시 일부 예산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전입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 중심으로, 이후 재원 다양화를 모색하였음
  - 이를 통해 정부출연금 의존도를 축소시켰으나, 자체수입 5,362억 원이 기금운영비, 경상사업비, 용자사업비 등 총지출 6,621억 원의 2/3를 상회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출연금이 높아 기금 운영의 효율화로 정부출연금의 축소가 필요함
- 따라서 정부는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III. 신규재원별 도입 가능성 검토

#### 1. 수산물 수입관세

##### 1) 수입관세 현황

- 수산물 수입관세는 일부를 제외하면 10% 또는 20%인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 수산물 수입관세는 4,403억 원으로 관세청 관세징수액과 대비할 때 4.5%를 차지함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평균 26,129억 원으로 2011년의 경우 전체예산 세입의 38.3%를 차지하며, 이 중 수산물 관세는 5.7%임
- 법정 전입금의 경우는 농수산물 관세액이 평균 95.6%를 차지하는데, 농수산물 관세액 중 수산물 관세액의 비중은 17.4%를 차지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관세액의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음
  - 수산물 관세징수액 중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일반지출 중 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입수산물에 부과·징수되는 약 4,000억 원 이상의 관세액 전액이 수산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함

##### 2) 농수산물 수입관세의 기금 편입 사례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11년 11월 26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2년 1월 17일 공포하였음 (시행 2013. 1. 1)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진흥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세 징수액과 복권 수익금 등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정부가 출연해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2001년 기준으로 전체 관세 수입은 64조 원이며, 이 금액의 3%는 약 1조 9천억 원임
-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의 확대와 축산물 수입관세의 편입(목적세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축산물 수입관세는 총 4조 4,200억 원이며, 이 중 축산부문 지원액은 평균 31%인 2,812억 원으로, 2012년 2월,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축산물 수입 관세의 축발기금 전입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 3) 수산물 수입관세의 수발기금 편입 필요성

- 동시 다발적 FTA의 체결, WTO/DDA협상 등으로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 1997년 국내 수산물 총 공급량의 24.5%였던 것이 2009년에는 32.6%로 8.1%p가 증가함
- 국내 수산물시장에서 수입수산물의 비중 증가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필요함
-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수입수산물 관세액의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관세액이 국산 수산물의 수출과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비중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수산물 수출과 소비 촉진에 대한 사업은 없고, 농특회계 전입에 따라 수산분야에 기여하는 바는 불명확함
-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은 수산물 수입에 따라 전액 발생되는 것으로, 사용처를 수산부문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및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산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수산물의 수출 진흥과 사용·소비 촉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

로 관세액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 추진함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수산물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액은 어업인 등의 지원, 특히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수산물 수출 진흥에 사용되는 것이 법 성격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신규기금 도입에 따른 사업은 재원과 사업간의 합치성을 고려 기사업 편입 또는 관련신규사업의 도입을 추진함

- 기사업 편입 방향(안) : 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유통협약자조금 지원, 수산업관측 사업), 수산물수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 해외수산시설투자 등
- 신규사업 도입 방향(안) : 수산물수출 촉진을 위한 제품개발사업(10대 수출품목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조사 및 해외 홍보사업), 국산수산물 소비촉진사업 등

#### 4) 수입관세의 편입 방안

○ 수산업법 제77조의 기금의 구성과 관련해 재원 종류를 수정함

- 본 조문 내에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일부를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조문을 추가하되, 신규구성재원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도입시 필요한 경우 수산발전기금 용도와 관련된 내용의 추가 검토가 요구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조항 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수정함

- 본 조문 내에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되, 수입수산물 관세액의 일부는 수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자로 수정함

##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 1) 현황 및 문제점

- IUU 단속 어선·어구·어획물 공매처분금은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를 위반한 선박이 소지하는 어획물을 공매처분하는 제도임
  -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을 부과함
  -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등은 몰수하고,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함(법 제35조)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항만국 검색 대상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항만국 검색시 어획물·장부·서류 등의 검사 및 관계인의 질문, 선박 입출항 금지 또는 어획물 양륙·전재 제한에 불응할 경우에만 처벌가능이 가능하여 모든 IUU 위반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 항만국 검색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검색 곤란 및 검색결과에 대한 조치가 곤란함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상 어획물 몰수를 위해서는 먼저 형사절차가 필요하나 형사고발 등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
  -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전재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은 하주에게 있어 매각대금의 처분이 곤란함

### 2) 공매처분금 수발기금 귀속 가능성

- 공매처분금은 불법으로 인하여 우리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수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기금으로 편입 가능성이 있음
  - 수발기금의 재원은 수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은 동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이 가능함

- 특히 IUU 위반으로 인한 공매금은 이미 동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된 수산물공매납입금 및 공유수면공매납입금과 같이 공매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동 기금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함

### 3) 수발기금 도입 방안

- 항만국 검색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과 검색 강화와 공매처분금 확대
  - 원양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검색에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여 공매처분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필요
  - 법률에 의한 항만검색 강화를 통하여 IUU 위반 어획물, 어선 및 어구 등 공매처분 대상 확대
- 수산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공매처분금 수발기금화 근거 조항 신설
  - 수산업법에서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IUU 위반 어선·어구·어획물에 대한 공매처분금을 수발기금으로 편입하는 근거 마련
  - 원양산업발전법에서 IUU 위반 어선·어구·어획물 공매처분금 수발기금 귀속 조항 및 용도 조항 신설

## 3. 불법어업 담보금

### 1) 불법어업 담보금 현황

- 우리나라의 중국어선 단속(나포) 현황은 2011년 현재 총 537건으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중국어선에 의한 한국측 EEZ에서의 불법조업이 큰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징수한 담보금은 2011년 현재 144억 원으로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국내 EEZ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국내 어업인의 어구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룸
- 외국어선(중국)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 근거법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제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임
  - 담보상한 기준은 1억 원(법무부, 2011.12월 7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이나, 최근 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확보 검토 추진 중임
- 징수된 담보금은 EEZ 어업법에 근거(제24조)해 전액 국고로 귀속됨
  - 국고 귀속 이후 배속 현황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 2) 담보금의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해당 어장의 경우 수산자원 손실, 어구 피해 등 어업경영체의 피해가 막대함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반면, 불법어업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존재함
  - 수산자원 남획, 어업경영체의 경영 불안정, 조업 불안전성 등에 관련된 직접적 사업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임
- 본 담보금은 수산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징수금의 사용처를 수산부문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및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
  -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으로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외에 과징금이 포함됨
  -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구제급여 지급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으로서 가산금 및 징수금 등이 포함됨
- 따라서 국내 수산자원의 보전과 어업경영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의 편입을 추진함

-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경영체의 피해 지원은 법률의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 항목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세부 용도는 14개 중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과 합치함
- 담보금의 기금편입 이후 관련사업의 수행으로 기금사업의 존치 논란 최소화 모색이 필요함
  - 신규기금 도입에 따른 사업은 재원과 사업간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 편입 또는 관련 신규사업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담보금 귀속 방안

- 수산업법 제77조에 불법어업 담보금을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조문을 추가할 수 있음
  - 동시에 EEZ 어업법·시행령 중 국고 귀속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1)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기준으로 유어장은 168개소로 유료낚시터 98개소, 체험어장 68개소, 기타 2개소가 분포해 있음
- 낚시산업의 사업규모는 최소 1조 350억 원에서 최대 1조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낚시장비 구입비, 낚시터(어선) 이용요금 등 일반 소비성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낚시산업의 규모는 현재의 추정 결과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낚시 인구는 주5일제 확대·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레저활동인 낚시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 낚시 인구 추정 : ('95) 325만 명 → ('00)500만 명 → ('04) 573만 명 → ('10) 652만 명

○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8호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5개 부처 34개 법령을 통해 분산·관리되던 낚시 관련법이 통합되고, 관리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됨

- 낚시 장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영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함

- 그러나 법률에 의한 낚시 장소 이외에도 강계곡·저수지·갯마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낚시가 이뤄지고 있음

## 2)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 낚시 관련법이 통합되고, 관리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되는 등 낚시산업이 수산업의 한 범위로 간주되고 있음

- 점차 유어낚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낚시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 유어낚시산업은 이제 단순한 레저활동을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 국가에서는 유어낚시산업을 수산업의 범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 어업과 다름없는 유어낚시 활동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 유어낚시는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생태에 어업 못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업과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유어낚시 또한 어업과 같은 자원관리를 하여야 함

○ 한편 자율적 발전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유어부담금 조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

- 현재 수산자원 이용에 대해 수익자인 낚시인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공정성을 달성하고자 유어부담금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방안을 검토 중임

○ 유어낚시산업의 발전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에 필요함



- 이처럼 산업적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어낚시 활동에 대하여 생태 및 자원관리를 위한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동 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목적에도 부합됨
  - 특히 유어낚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업법의 제76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합함
- 참고로 지식경제부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21조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은 대체물질의 개발, 특정 물질의 배출 억제,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21조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제24조의 2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 3) 수발기금 도입 방안

- 기금의 구성과 관련해 재원 종류를 규정한 수산업법 제77조에 유어낚시 자원부담금을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조문을 추가함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유어낚시자원부담금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제48조(유어낚시자원부담금의 부과·징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어낚시 자원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업자에게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48조의 1(부담금의 산정기준)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은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산정한다

## 5. FTA기금 전입금

### 1) FTA 관련 기금 및 사업 현황

- 2004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고 동년 4월 1일 시행됨
- 2011년 10월 22일 법 개정 이전에는 FTA 체결로 인한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토록 함
  - 그러던 것이 2011년 10월 22일 이후 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에서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수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삭제하면서, FTA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FTA 이행 지원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FTA기금의 설치는 2004년 FTA법 제정과 동시 설립되었고,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됨
- 농업분야 FTA사업비는 2011년 1조 5,237억 원, 2012년 2조 75억 원이고, FTA기금사업비 비중은 24% 및 28%임
  - FTA기금에 수산분야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2011년 10월 22일 법 개정전에는 수발기금에서 FTA 관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임
- FTA 기금에서는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비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FTA기금의 운용액은 기존의 농축산업 관련 FTA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음
- 수산분야 FTA사업은 2011년 999억 원, 2012년 1,186억 원으로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2011년 시작하였는데, 농어업 FTA사업비에서 수산분야 사업비 비중은 2011년 6.2%, 2012년 5.6%에 불과함

- 수산분야 FTA사업비는 수발기금, 농특 및 광특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발기금 사업비는 2011년 191억 원(19%), 2012년 194억 원(16%)임
-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 FTA사업비는 2020년까지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분야의 사례로 볼 경우 수산분야 FTA 사업비 중 FTA기금으로 24% 내지 28%를 감당해야 할 경우 약 2,400억 원에서 2,800억 원의 FTA기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 FTA기금의 수발기금 귀속 당위성

- 한·미FTA 체결 이전까지만 해도 FTA로 인한 수산피해는 미미하다고 간주하여 수산분야 FTA사업 추진이 거의 없었으나 향후 FTA 수요 급증이 예상됨
- 한·미 FTA 체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 FTA사업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산분야 FTA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기금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FTA기금에서는 수산분야 사업을 위한 기금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기금 확충이 필요함
- 현행 FTA기금사업에는 수산분야가 제외되어 있고, 이미 기존 농축산업 분야 FTA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현행 기금으로는 추가적인 수산사업의 추진이 곤란함
- 농업분야와 차별화된 재원 확보 및 사업수행이 필요함
- 농축산업과 수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많은 차이점이 있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의 차별화가 요구됨
- 특히 기금의 운용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도 수산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발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수산분야 FTA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수발기금으로 전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FTA기금 수발기금 귀속 방안

- 한·미 및 한·중·일 FTA 대책을 위한 수산사업을 발굴하여 현행 FTA기금 사업으로 확정하고, FTA 수산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함
- 법제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항을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다만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은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운용한다.”로 개정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제1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개정함

## 6. 감척어선 매각대금

### 1) 어업구조조정사업 현황

- 우리나라의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1994년부터 추진, 일반감척과 특별감척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일반감척의 경우 1994년부터 2011년(잠정)까지 총 1.6조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총 17,188척이 처분되었음
  - 국제(특별)감척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 원을 투입하여 1,308척의 근해어선이 매입됨
- 어업구조조정 대상인 어선·어구의 장비매각대금은 2011년 기준으로 12억 원에 이르는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2)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및 방안

- 수산업법에서는 기금재원으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어선 및 어구 매각대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됨
  - 그러나 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은 1999년 시작되어 2002년에 실질적으로 종료되면서, 수산발전기금으로의 편입액은 전무함
- 향후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추진될 예정임
  -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법이 개정·입법 예고되었는데, 2007년 7월 26일 이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함
  - 2012년 중반 이후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일반감척사업으로 발생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이 편입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한 어선·어구 매각대금은 재원의 성격과 수산발전기금 용도 중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합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재원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7. 수산자원이용부담금

### 1) 현황 및 문제점

#### (1) 수산자원조성금

-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어업면허, 허가, 신고업자 및 공유수면 점사용자 등에게 부과하는 조성금임
  - 제44조(조성금)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2011년 현재까지 징수한 건수는 총 36,521건에 금액은 130여 억 원에 이르지만 연간 징수액은 2011년 기준 약 13여 억 원에 불과함
- 조성금 징수원별로 보면 2011년의 경우 어업허가가 약 8억 원, 어업면허가 약 5억 원으로 대부분 어업의 인허가가 부과하는 징수금에 많았고, 매립 등 공유수면 점사용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임
-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은 법률에 의거해 전액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종묘방류사업 등)에 사용됨
  - 즉,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조성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수발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과 배출부담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서는 할당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함
- 한편 동법 제41조(배출부과금)에서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함
  - 배출금은 기본배출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분류하고, 배출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는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토지 등의 매수,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해양생태계의 복원으로 규정함

(4)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부담금 및 가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음

(5) 발전소 및 임해공장 온배수

- 현재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수산자원의 부정적 이용행위 중에 가장 큰 것은 임해지역에 위치하는 발전소 및 공단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우리나라 발전소의 대부분은 냉각방식으로 해수 및 담수를 활용하고 이를 자연에 배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7.66GW에 이르며, 연간 약 454T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매년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전설비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상용자가발전을 제외하면 전체 발전설비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3.47GW이며, 연간 약 434T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발전소 및 임해공단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약 552.6억톤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온배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서 연간 250.4억 톤의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음

(6) 문제점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육상과 해양에서 각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대단히 포괄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이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련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현재의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위해 인허가 수수료에 일부 부담하고 있고, 면제대상이 많아 금액면에서도 미미함
  - 수발기금이 원칙적으로 용자사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행 수산자원조성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적합하지 않음
- 그러나 발전소를 비롯한 임해공단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많은 악영향 미치고 있음
  - 온배수 배출은 배출지 인근의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들의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많은 규제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

2) 수산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당위성

- 우리나라는 수산업의 근간인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증강시키기 위하여



많은 법적 규제와 더불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나 부담금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온배수 배출 업소에 대하여 온배수 배출을 규제하던가 아니면 그 행위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원관리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수산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및 수발기금 편입방안

-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수산자원이용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함
  - 의원입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를 제44조(수산자원이용부담금 조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제1항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자원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함
  - 징수대상에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발전소 및 임해공장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함
  - 한편 부담금의 사용처는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용처를 확대함
- 수산업법 제77조(기금의 조성)에 수산자원이용부담금을 기금의 편입대상으로 법령 개정함
- 기존의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은

대부분 배출량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지여계수, 위반횟수 등) 등임

- 온배수 배출은 불법적인 배출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부과금 징수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톤당 최소 1원, 5원 그리고 10원을 부과한 경우를 가정하였고, 온배수 배출량은 2009년을 기준으로 과거 추세를 감안하여 약 6%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함

## 8. 농특세 확대

### 1) 농특세 현황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임
  - 이는 UR타결에 따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7.1~2014.6.30의 20년간임
  -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에 최초로 징수된 1,695억 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조 8,666억 원이 징수되었음
- 농특회계의 사업계정 중 농어촌특별세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세입예산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며, 이 중 농어촌특별세는 38.1%를 차지하고 있음
- 각 기금의 수입내역 중 수발기금의 정부 내부회계(출연금 포함) 중에서 수발기금은 5.4%를 차지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금 전출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은 농지관리기금과 양곡증권정리 기금, 수발기금이 있음

- 농어촌특별세에서 구조개선 계정과 농어촌특별세 계정의 수산분야 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서 농업의 91.3%에 비해 아주 적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특별세계정의 내부거래에서도 기금 관련은 쌀변동 기금과 농어업재해기금만이 있고, 수산관련은 없음
- 이처럼 농어촌특별세 수입 중 수산분야의 비중이 낮고, 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지만, 신규재원 편입 가능한 것은 경정경주에 부과되는 농특세가 유일하므로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 레저세(경정경주) 농특세의 수발기금 편입 필요성

- 레저세(leisure tax)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임
  - 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에서 수익금의 용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임
- 하지만 경정은 타 레저 세원과는 달리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수산에 대한 수익금의 배분이 필요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산업에만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경정에서 수산분야로 편입이 가능한 세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유일한데, 이를 수산분야에 한정지어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을 추진함
- 신규기금 도입에 따른 사업은 경정이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채원과 사업간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기사업 편입을 추진함
  - 기사업 편입 방향(안)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양식어업지원(내수면양식시설)

### 3) 레저세(경정경주) 농특세의 수발기금 편입 방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항 중 ② 세출,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의 일부 수정함
  - “다. 어항건설”을 “다. 어항건설과 수산물발전기금사업(경정으로 인한 수산 피해보전)”으로 수정함

## 9. FTA 수산물공매납입금

### 1) 관세율할당제도

-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란 이중 관세제도로써, 특정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
  - TRQ 관리방식은 실행관세에 의한 TRQ 관리, 선착순 배정방식, 수입허가제도에 의한 TRQ 관리,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 수입권 공매방식, 국영무역방식,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운영 등이 있음
- 관련법령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이는 수산물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수산업 경쟁력강화 및 피해업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
  - 부과대상은 관세율할당품목에 대한 수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입권을 경쟁입찰 실시 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하여 낙찰된 수입자로, 부담요율은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여 수입자료 결정된 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액임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2) FTA별 수산물관세율할당 현황

-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아세안(ASEAN), 한-EU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일부 수산품목에 대한 관세율할당(TRQ)제도를 도입함

- FTA 공매납입금으로 수발기금에 귀속되는 FTA는 한·아세안 FTA임
  - 한·EFTA는 대형선망수협에서 수익금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한·미 FTA와 한·EU FTA는 통관선착순으로 물량이 할당되기 때문에 공매납입금이 없음
- 한·아세안 FTA에서 품목별 TRQ 물량은 새우살과 냉동새우·보리새우 5,000톤, 가공새우 2,000톤, 갑오징어 2,000톤, 산것·신선·냉장 새우·보리새우 300톤 등 총 9,300톤임
  - 수입차익금은 국내 가격에서 판매 원가를 공제한 판매이익금 가운데 일부로서, 수입차익금 전액은 수발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41억 원에 그쳤던 수산물공매납입금은 연평균 34%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25억 원에 달함
  - 부담금은 수산업법 제76조, 제77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되어 FTA 등의 시장개방에 따른 어업인의 어업경영기금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산업 경쟁력 육성에 활용되고 있음

### 3) 수산발전기금 확대 방안

-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우 협정문에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선착순 배분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수입권 공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므로, FTA 수산물 공매 납입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을 비롯해 7개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관세할당 수산물 품목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즉, 수입권 배분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TRQ내 수입권을 배분하는 공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함
- 더불어 FTA 수입이익금을 수발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수산발전기금의

신규재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중국 등 수산강국과의 FTA 체결시 관세율할당물량을 설정하는 것은 저율의 관세에서 할당량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V.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 1. 재원조성의 비전 및 목표

#### 1) 재원조성의 필요성

##### (1) 수발기금 사업체제 개편방향

- 2001년 설립당시 262억 원으로 출발한 수발기금은 10년이 지난 2011년 누적으로 8,725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8%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사업의 중복성·유사성·광범위성, 사업추진의 적절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사업체제 개편이 요구되었음
-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방향
  - 현행 사업체제 개선 : 재원 조성이 적정성 강화,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및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함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예산사업으로 전환, 사업내용의 조정 및 사업금리 조정방안, 수산보조금 논의동향에 따른 사업 개편 방안
  - 신규사업 발굴 : 기금설치법에 부합한 사업, 기금재원과 연계한 사업, 미래 수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등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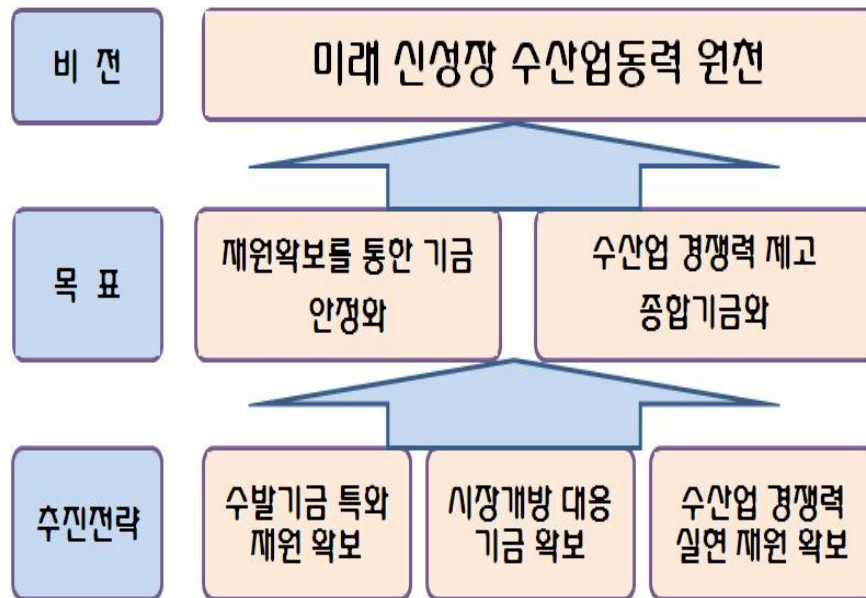
##### (2) 재원조성의 필요성

- 특화된 수발기금의 정체성 확립 필요
  - 기금존치평가에서 수발기금은 재원과 관련해 목적사업을 특화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수발기금의 특화를 위해 운용사업의 조정과 더불어 추진사업의 통폐합 및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 발굴
  - 기금준치평가에서 수발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 확충이 지적됨
  -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재원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유통사업 확대에 따른 용자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증대로 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재원의 확보가 요구됨
- 기금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재원 확보
  - 수산물 관세수입금 : FTA 체결 가속화로 인한 시장 개방 및 주요 수산 자원 보유국의 자원자국화 강화에 대응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후생 증대 및 가격 조정을 통한 생산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
  - 수산자원이용자에 대한 부담금 신설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비하고 유어 및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 징수 필요
  -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재원 확보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 최소화 및 구조조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필요
- 신규사업 발굴에 대응한 새로운 재원 확보
  - 2011년 선행 연구에서는 수발기금에 부합하고 미래의 국내외 수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2011년 현재 19개(경상 8개, 용자 11개)사업에서 총 32개(경상 9, 경상/용자 1, 용자 22개) 사업을 제안하여 순수하게 13개 사업이 증가함
  -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사업이 수발기금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의 기금의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2)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조성 비전 및 목표

-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비전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이 라는 관점과 기금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 신성장 수산업동력 원천”으로 설정함
-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 또는 동 기금 재원 확보의 비전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설정함



[수산발전기금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한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첫째는 “재원 확보를 통한 기금 안정화”이고, 둘째는 “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기금화”임
- 기금재원 확보의 첫째 목표는 기금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안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함
- 둘째는 수산발전기금의 목적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기금화를 둘째 목표로 설정하였음



- 기금재원 확보의 전략은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크게 기금의 특화, 새로운 대외 수산경제 대응 및 수산업의 경쟁력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수산발전기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수발기금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임
  - 둘째, WTO/DDA, FTA 등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임
  - 셋째, 수발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수산업 경쟁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임
- 이상의 비전, 목표 및 실천전략은 크게는 수산발전기금사업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협의로는 수발기금 신규재원 확보에 한정될 수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신규재원을 발굴하고 기금의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기존재원의 추세 분석 및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기금규모를 추정하였음

## 2. 수발기금 재원조성 추진방안

- 2012년 현재 수발기금의 재원은 공자기금예수금과 자체수입원인 재원이 10개이며, 이 중 순수하게 법에 의하여 기금재원으로 된 것은 8개임
- 한편 신규로 본 연구에서 발굴한 재원은 8개인데, 이 중 감척어선 매각대금은 기존에는 2008년 이후에 종결되었고, 새로이 연근해어업구조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편입된 재원이기 때문에 신규재원으로 선정함
- 기존재원의 경우는 2012년 수산발전기금 중기계획에 의한 조성예상액을 준용하였고, 신규재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8개 재원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2016년까지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규모를 추정하였음
- 기존재원은 2012년 151,353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61,160백만 원으

- 로 약간 증가하는 중기계획에 따랐음
- 법정부담금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공유수면점사용료는 2014년 이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고, 수산물 판매수입 및 수산물 구매납입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반면 신규재원은 발굴한 재원이 모두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결과 2012년 1,200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92,368백만 원으로 증가함
- 2016년 기존 및 신규재원을 합한 조성자금은 353,528백만 원이고 이 중 신규재원이 약 54%를 점할 것으로 추정됨
- 기초자산(순자산 + 부채)과 기존 및 신규 조성자금을 합한 자금에서 지출을 뺀 기말자산의 합계는 2012년 955,771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734,228백만 원으로 늘어남
- 동기간 재원 순증액은 861,728백만 원으로 추정되나, 신규재원의 도입시기에 따라서 조성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

[수산발전기금 신규 및 기존재원 확보 방안(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성 누계		
기초자산	872,500	955,771	1,125,300	1,293,676	1,494,698			
순자산	821,500	853,771	972,300	1,089,676	1,239,698			
부채	51,000	102,000	153,000	204,000	255,000			
자 체 조 성	합 계(A+B)	152,553	260,664	277,652	312,708	353,528	1,357,105	
	소 계(A)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733,972	
	기 존	정부출연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공자기금예수금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법정부담금	27,941	23,009	22,282	22,282	22,282	117,796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2,531	2,809	2,082	2,082	2,082	21,58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0	200	200	200	200	810
		- 수산물 구매납입금	8,400	11,000	11,000	11,000	11,000	52,400
		공유수면 점사용료	14,221	5,904	-	-	-	20,125
		수산물 판매수입	17,594	15,213	20,822	28,498	39,003	121,130
	기타이자수입	25,597	26,518	28,828	30,103	33,875	144,921	
	소 계(B)	1,200	124,020	139,720	165,825	192,368	623,133	
	신 규	1. 수산물수입관세	-	4,645	4,645	4,645	4,645	18,580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	2,000	2,000	2,000	2,000	8,000
		3. 불법어업 담보금	-	17,443	19,188	21,106	23,217	80,954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5,089	5,242	5,399	5,561	21,291
		5. FTA기금 전입금	-	30,000	40,000	60,000	80,000	210,000
		6. 감척어선 매각대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7.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62,023	65,744	69,689	73,870	271,326
8. 농특세 확대		-	1,620	1,701	1,786	1,875	6,982	
지 출	합 계	69,282	91,135	109,276	111,686	113,998	495,377	
	경상사업	64,236	84,016	99,930	100,090	100,160	448,432	
	기금운영비	1,458	1,687	1,742	1,819	1,889	8,595	
	공자기금차입금이자	3,588	5,432	7,604	9,777	11,949	38,350	
기말자산 합계	955,771	1,125,300	1,293,676	1,494,698	1,734,228	861,728		
순자산	853,771	972,300	1,089,676	1,239,698	1,428,228	606,728		
부 채	102,000	153,000	204,000	255,000	306,000	255,000		

주 : 기존재원은 2012 수산발전기금 중기계획에 근거함

- 신규재원은 전술한 3대 추진전략에 연계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수발기금 특화 재원 확보전략에는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및 농특세 확대 등으로 수발기금의 특성에 맞는 재원들임

- FTA 등 시장개방 대응 기금 확보전략에는 수산물 수입관세와 FTA기금 전입금이 이 전략의 재원이 될 수 있음
- 수산업 경쟁력 실현 자원 확보전략에는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이라든가 구조개선 등의 수입금으로서 IUU 위반 공매처분금, 불법어업 담보금 그리고 감척어선 매각대금이 포함됨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3대 추진전략별 재원]

구 분	신규재원명	비고
수발기금 특화 자원 확보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농특세 확대	3
시장개방 대응 기금 확보	○ 수산물 수입관세 ○ FTA기금 전입금	2
수산업 경쟁력 실현 자원 확보	○ IUU 위반 공매처분금 ○ 불법어업 담보금 ○ 감척어선 매각대금	3

## 2) 추진방향

- 앞서 제시한 신규재원은 당장 수발기금으로 편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별 기금편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별 기금화 전략을 수립함
-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하고 단기(2013년), 중기(2014년), 장기(2016년)의 단계별로 기금화하는 전략을 수립함
- 또한 기금별 시나리오에 의한 기금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1안은 가장 낙관적인 안이고, 2안은 보통, 그리고 3안은 비관적인 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함
  - 감척어선 매각대금과 불법어업 담보금은 2012년부터 가능하고, IUU 위반 공매처분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아 단기로 설정함

- 낙관론인 1안은 단기 3개, 중기 4개, 장기 1개로 분류하였고, 중도론은 FTA기금 전입금을 장기전략으로 전환한 것임
- 비관론인 3안은 단기 3개, 중기 2개, 장기 3개로서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이 장기로 분류된 것임
- 이상과 같이 수산분야 내부에서 조달이 가능한 재원은 비교적 단기 및 중기로 분류하였고, 수산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 재원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음
- 특히 수산물 수입관세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과제로 분류하여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함

[시나리오별 단계별 신규재원 확보 전략]

구 분	1안(낙관)	2안(중도)	3안(비관)
○ 수산물 수입관세	중기	중기	중기
○ IUU 위반 공매처분금	단기	단기	단기
○ 불법어업 담보금	단기	단기	단기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중기	중기	<b>장기</b>
○ FTA기금 전입금	중기	<b>장기</b>	<b>장기</b>
○ 감척어선 매각대금	단기	단기	단기
○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b>장기</b>	<b>장기</b>	<b>장기</b>
○ 농특세 확대	중기	중기	중기
○ 합 계	단기 : 3 중기 : 4 장기 : 1	단기 : 3 중기 : 3 장기 : 2	단기 : 3 중기 : 2 장기 : 3

주 : 단기-2013년, 중기-2014년, 장기-2016년

3) 시나리오별 신규재원 규모 추정

- 각 시나리오별로 기초자산과 기존재원은 그대로 준용하고, 신규재원은 도입시기를 조정하여 추정함
  - 정상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경우 2014년에는 1,021,923백만 원으로 1조원이 넘어설 예정임

- 시나리오별로 볼 때 2016년에 낙관론은 1,495,417백만 원, 보통은 1,395,417백만 원, 비관론적인 입장에서도 2016년에는 1,384,776백만 원에 이릅니다
- 더 나아가서 모든 신규재원을 단기에 달성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조 7천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재원 중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다른 분야에서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 모든 재원을 단기에 달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시나리오별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낙관론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124,554	1,255,887
	기 존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신 규	1,200	20,643	73,975	96,136	192,368
	기말합계	955,771	1,021,923	1,124,554	1,255,887	1,495,417
보 통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084,554	1,155,887
	기 존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신 규	1,200	20,643	33,975	36,136	192,368
	기말합계	955,771	1,021,923	1,084,554	1,155,887	1,395,417
비관론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079,312	1,145,246
	기 존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신 규	1,200	20,643	28,733	30,737	192,368
	기말합계	955,771	1,021,923	1,079,312	1,145,246	1,384,776

주 : 기말합계는 지출을 공제함 금액임

## V. 결 론

- 수산발전기금은 그 탄생이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우리 수산업계가 대단히 어려울 때 설립되었고 그 재원 또한 매우 미약하였으나, 현재는 수산정책 및 수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성장하였음

- 반면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의 수산환경에 부응하면서 기금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 특히 수산발전기금사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사업체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발기금의 재원확충은 더욱 절실한 상황임
- 이상의 수발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비전을 “미래 신성장 수산업동력 원천”으로 제시하고, “재원 확보를 통한 기금 안정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기금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 수산발전기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수발기금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 확보
  - WTO/DDA, FTA 등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 수산업 경쟁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원 확보
- 이상의 비전, 목표 및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발기금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들을 조사·분석하였고, 8개의 신규 재원을 수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시하였음
  - 수발기금 특화 재원 확보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및 농특세 확대
  - FTA등 시장개방 대응 기금 확보 : 수산물 수입관세와 FTA기금 전입금
  - 수산업 경쟁력 실현 재원 확보 : IUU 위반 공매처분금, 불법어업 담보금, 감척어선 매각대금
- 제시된 신규재원을 기금화하는 방안으로서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기금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낙관론, 보통, 그리고 비관론으로 구분하여 기금의 규모를 추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8개 재원과 이를 확보하는 전략은 향후 정부나 수

- 발기금사무국에서 추진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재원규모는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추정한 값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함
  - 각 재원별로 제시된 확보방안 또한 추진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수발기금 재원 확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부서 또는 기금사무국만의 임무가 아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발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산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는 바임
  - 즉, 관계, 학계, 업계 및 언론계를 아우르는 추진단을 조직하여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 및 일반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수산발전기금은 수산부문에 설치된 유일한 기금으로, 수산 전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본 기금은 대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인 및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설치되었음
- 최근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국내 수산업이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부문의 환경 변화를 고려, 수산업의 진흥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목표로 한 수산부문 비전 2020,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10대 수출전략 품목 육성 등 신수산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 이들 정책은 전환기에 직면한 국내 수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신수산정책은 기사업의 재편은 물론 신사업의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수산발전기금 사업도 새로운 수산정책에 부합되도록 재편·확대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면 신수산정책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위생·안전 요구의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공급시스템에 대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양 측면에서 대대적인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 이에 산지 및 유통주체의 역할 변화와 이로 인해 관련 사업의 자금수요가 변화·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 수산발전기금 중 유통분야 사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의 수산발전기금은 신수산정책에 맞춘 역할의 전환·확대 및 변화된 사업에 합당한 신규재원의 도입·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은 설립 이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2003년), 농산물가격안

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2005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시(2006년), 수산물공매납입금(2007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2008년)등의 신규재원을 매년 편입함으로써 재원규모를 확충해 왔음

-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원조성액 증가세가 줄어들고 또한 자체수입 재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의 축소(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축소), 유통사업 확대에 따른 용자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수발기금조성계획(수정안)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신규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수산발전기금은 “경쟁력 및 자생력 있는 수산업 실현의 新성장동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운영 전략을 수정, 2016년까지의 기금 조성목표액을 1.5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 운영 전략을 ①대내외 수산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②수산부문 유일한 종합적 지원기금으로서의 위상 확립으로 수정하였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입재원의 감소(해양환경개선부담금 축소) 등으로 수산발전기금조성계획(수정안)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신규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국내 수산정책의 전환에 맞추어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용도에 합치하는 신규재원의 도입이 요구됨
- 참고로 수산경제연구원에서는 한중 FTA 추진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원 발굴 등을 위해 기금조성액을 3조 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음

○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수산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서 정책자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발전기금 규모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신규재원(안)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 적절성 검토와 함께 세부 실행 방안(연차별 추진 방안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중장기적으로 수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신수산정책의 비전에 합당한 신규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이의 효율적 편입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Ⅱ.

##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현황 분석

### 1.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및 변천 과정

- 수산발전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금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년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사무국을 설치함
  - 사무국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관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함
- 수산발전기금은 2001년 기금 설치 당시 5가지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8개의 경상사업과 24개의 융자사업으로 성장하였음
  - 기금운용 초기에는 어업경영자금 융자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안기금의 이관을 계기로 예산지원 방향을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과 수산물가공업의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해양환경 개선, 수산자원 관리, 기르는 어업의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어업기자재 생산 촉진, 원양어업 육성 등으로 구분됨
  - 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사업으로 구분됨
- 세부내용
  - 해양환경개선사업 :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과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어장환경 개선
  - 자원관리사업 : TAC 경영개선자금지원, 어업질서 확립자금지원
  - 기르는 어업육성사업 : 해면양식시설, 내수면 양식시설, 사료저장시설 지원

- 가공 및 유통사업 : 산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수산물 유통자금,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가공시설 현대화, 산지 가공시설자금 지원
  - 어업기자재 생산촉진사업 : 어망생산 운영자금, 양식기자재 구입자금,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자금 지원
  - 원양어업사업 :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자금지원
  - 어업인력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 이상과 같은 수산물발전기금은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WTO 수산물보조금 협상이 타결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 경우 필요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동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2. 수산물발전기금의 사업체제

### 1) 기금사업의 종류 및 운영 현황

- 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지원형태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상사업과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해양환경보전,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경영지원,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해양환경보전분야에는 폐기물 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이 있음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분야에는 비축사업, 수산물 자조금 지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됨
  - 수산경영 지원 분야에는 양식어업지원, 노후 원양어선 대체,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소득보전 직불금, 폐업지원금사업이 포함됨
  -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분야에는 수산물수매사업, 우수수산물 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해외수산물수출투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사업이 포함됨

<표 2-1> 수산발전기금 주요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b>□ 경상사업</b>	
○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DB관리로 해양환경개선 도모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 조업 중에 발생된 페어망·그물 등 수거
○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사업	- 훼손된 해안습지 등 해양생물서식지 등의 개선 복원
○ 비축사업	-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 출하조절	- 김, 납치, 전복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업계 자율적 생산조정, 출하조절 기능강화 및 수산업 관측
○ 연안 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 바다나 내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실어구, 낚추 및 퇴적쓰레기 수거로 어선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 생계소득 및 안정(지자체)	-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따른 어가생계 안정비 지원
○ 소득보전직불금	- 한·미 FTA이행에 따른 수산물 수입증가로 국내수산물 가격이 80%이하로 하락되는 품목에 가격 보전
○ 폐업지원금	- 한·미 FTA이행으로 경쟁력을 상실 또는 피해가 우려되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
<b>□ 용자사업</b>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용자)	- 총허용어획량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지원(용자)	- 양식어업 기반구축을 위한 노후시설개량 등 지원 - 수협사료시설운영지원으로 원활한 경영개선 도모
○ 노후원양어선대체(용자)	- 노후 원양참치선망어선의 신조대체자금 지원으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 원양어업관리회사(용자)	- 중소기업규모의 원양선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원양어업관련 회사의 어획물의 운반·가공·판매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용자)	- 노후 원양어선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으로 원양업체 경쟁력 제고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용자)	- 양식시설을 고밀도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하여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 수산물수매지원(용자)	-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용자)	- 수출용 원료구입자금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촉진
○ 가공시설 및 운영 (용자)	- 수산물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가공 산업 육성
○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 해외 양식·유통·가공시설소요자금 지원으로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해외어장 및 수산자원 확보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	-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 공판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지원

- 해양관련 기금수입원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 생태보전 협력금, 해양 심층수 이용부담금, 수산물공매납입금은 해양환경보전사업을 위한 경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은 성격에 따른 회계 재조정 되었음
  - 다기능 청소선 운영 지원, 수산동물 질병관리,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은 사업 중단 및 농특회계로 이관되었음
- 노후 원양어선 대체사업은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대체를 통한 선박 안전성 확보 및 장비 현대화로 원양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 도모를 위해 사업비를 확대하였음



<표 2-2> 수산발전기금의 사업 종류(최근 3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양환경 보전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 시스템구축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해양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해양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연구		
	다기능 청소선 운영지원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 개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비축사업	비축사업	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출하조절사업	출하조절사업
	수산동물질병관리		
	(경)수산동물질병관리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	
수산 경영 지원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양식어업지원	양식어업지원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영어자금용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어업인정책보험지원		
	소득보전직불금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활어수출확대를 위한 특수차량 등 구입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생계소득 및 안정	생계소득 및 안정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기금·용 자)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	해외수산시설투자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합 계	총 28개 사업	총 21개 사업	총 16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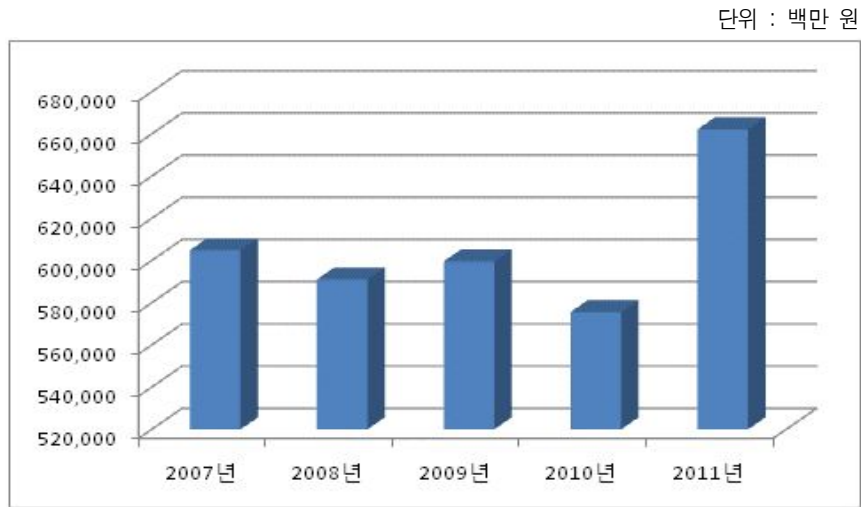
## 2) 재원조성

- 수산발전기금은 2011년 말 현재 누적 8,72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 2001년 수산발전기금의 조성액 262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38% 증가한 셈임
  - 이는 신규재원이 포함됨으로써 자체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신규재원은 해양환경개선 부담금('03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수산분야자금 이관('05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시('06년), 수산물공매납입금('07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08년)등 임
- 2011년 기준으로 총 조달규모 6,621억 중 81%가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약 8%, 여유자금회수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의 경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수산물공매납입금, 감척어선 매각대금, 용자원금 회수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수산물판매수입대금, 면허료 및 수수료 등 11개 항목임
- 그러나 자체수입 중 용자원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 재원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국토해양부 소관 수입재원으로 158억 원임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순수 자체수입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수산물판매대금과 수산물공매납입금이 336억 9,500만원임

<표 2-3> 수산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 달	○ 정부출연금	20,000	-	24,860	5,500	-
	○ 공자기금예수금					51,000
	○ 민간출연금(컨공단)					
	○ 자체수입	500,974	507,345	512,049	523,317	538,863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6,208	21,591	12,144	8,175	6,617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42	4,321	6,908	6,507	8,202
	- 수산물공매납입금	4,123	6,262	8,493	10,140	12,548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67	62	70	101
	- 감척어선 매각대금		1,771			-
	- 어항토지매각대금		1,170	561	2,131	718
	- 용자원금회수금	439,087	431,319	445,802	464,093	470,827
	- 이자수입 등	17,462	19,514	18,606	19,278	23,633
	- 수산물판매수입	10,976	14,121	13,699	9,541	11,116
	- 면허료 및 수수료	12,376	7,209	5,774	3,382	4,983
	- 기타 수입					118
	○ 여유자금 회수	83,882	83,648	62,667	46,763	72,280
	합 계(운용액, 운용규모)		604,856	590,993	599,576	575,580
운 용	○ 사업비	519,972	527,020	551,514	499,465	550,822
	- 경상지출	29,715	41,673	68,809	40,380	49,503
	- 용자지출	490,257	485,347	482,705	459,085	501,319
	○ 기금관리비	402	385	390	402	432
	○ 사업운영비	834	921	909	842	1,016
	○ 공자기금예탁금이자상환					727
	○ 여유자금 운용	83,648	62,667	46,763	74,871	107,662
	○ 한은예치국고금					1,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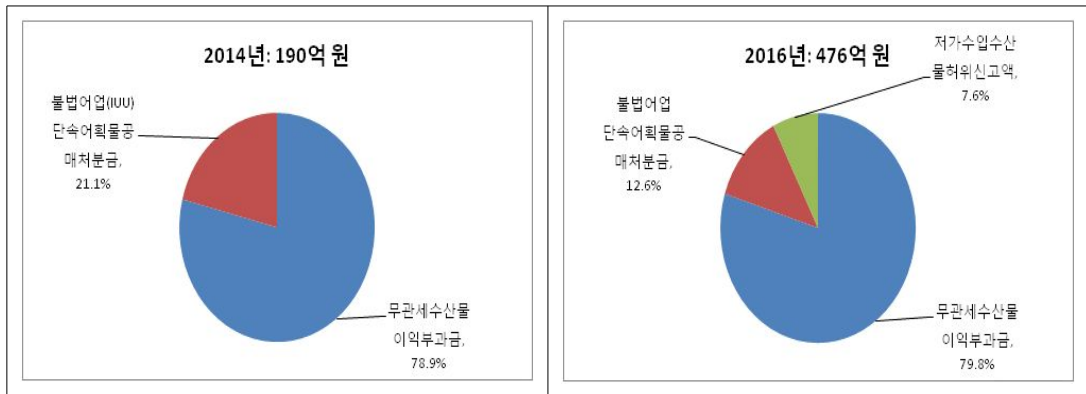
<그림 2-1> 수산물발전기금 연도별 자금 조달 규모

- 중장기적으로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2016년까지 기금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첫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문에서 15% 정도를 수발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함
  - 둘째, 원양어업 및 중국어선, 연근해 어선 등에서 불법 어획물에 대한 공매처분금을 기금으로 편입함
  - 마지막으로 FTA체결에 따라 수입수산물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의 포탈을 목적으로 적정 수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청에 적발이 된 금액을 기금으로 편입함

<표 2-4> 신규편입추진 재원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190	286	476
1	무관세수산물이익부과금	150	200	380
2	불법어업(IUU) 단속어획물공매처분금	40	53	60
3	저가수입수산물허위신고액	-	33	36



<그림 2-2> 신규 편입 재원 (2014년과 2016년)

### 3) 운용 현황

- 2011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6,621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5,5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액 편성되었음
  - 경상지출 495억 원('10년 대비 10% 증가), 용자지출 5,013억 원('10년 대비 9.2% 증가), 여유자금운용 1,707억 원('10년 대비 43.8% 증가)으로 편성되었음
- 경상사업과 용자사업을 모두 합한 사업비가 2011년 전체 운용규모의 83.2%를 차지하고 있고, 여유자금운용이 약 16.3%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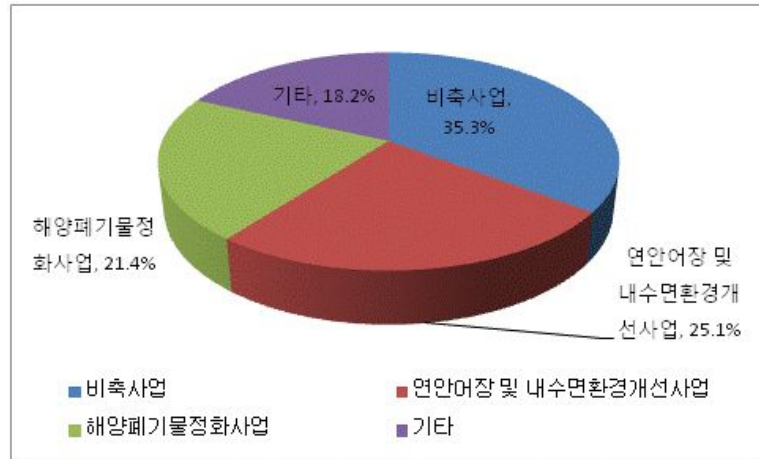
<표 2-5> 수산발전기금의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2011년)

단위 : 억 원

조 달		운 용	
계	6,621	계	6,621
○ 자체수입	5,389	○ 사업비	5,508
○ 정부내부수입(출연금)	51	○ 기금관리비	4
○ 여유자금회수	723	○ 사업운영비	10
○ 기타 수입	458	○ 정부내부지출	7
		○ 여유자금운용	1,077
		○ 한은예치국고금	15

(1) 경상사업 부문

- 2011년 경상사업 총 지원비는 495억 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비축사업이 경상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35.3%)을 차지하고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25.1%)과 해양폐기물정화사업(21.4%)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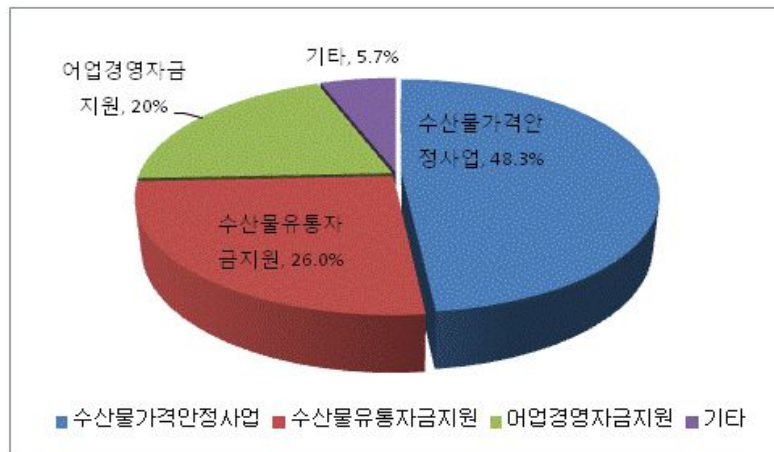
<그림 2-3> 경상사업 부문(2011년 기준)

- 한편 2011년 기준 경상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은 98%를 기록함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지자체 포함)이 계획 대비 실적 100% 실적을 달성하였고, 소진율이 가장 낮은 사업은 계획대비 30%를 소진한 출하조절사업으로 나타남
  - 경상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축사업의 경우 소진율이 2010년에서 86%에서 2011년 계획대비 462%의 초과 달성하였음
- 총 사업지원금액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지원 계획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124억 원이 지원되었음

(2) 용자사업부문

- 2011년 기준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약 5,013억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수산물가격안정사업에 2,419억 원이 지원되어 전체 용자사업의 48.3%를 차지하였음

- 용자사업의 두 번째로 큰 비중(26%)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수산물유통자금지원으로 수산물 표준규격제품 출하자에 대한 지원 및 산지중도매인 유통자금, 공판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대출금리 3~4%, 1년 상환임
- 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은 전체 용자사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TAC 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양식어업지원, 노후원양어선대체, 영어자금이 주요사업임



<그림 2-4> 용자사업 부문(2011년 기준)

- 그러나 원양어업관리회사,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순환여과식양식시설사업은 지원 실적이 전혀 없음
- 기금의 용자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상환이 대부분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 등 장기상환을 지원조건으로 함
  - 금리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3~4% 수준을 지원조건으로 함

(3) 여유자금 운용

- 수발기금의 5년 평균(2007~2011년)의 여유자금액은 평잔 기준 698억원이고 평균수익률은 4.61%임

- 이는 농축수산물 관련 총 9개 기금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재해기금, 농지기금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임

○ 향후 자산배분을 통한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2016년까지 연 6% 수익률 달성을 계획하고 있음

<표 2-6> 기금별 여유자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 평균
농안 기금	여유자금	1,538	1,790	2,435	3,526	3,525	2,563
	수익금액	51	75	122	191	128	113
	수익률	3.34	4.21	5.01	5.42	3.64	4.42
농지 기금	여유자금	853	899	1,587	514	11,540	4,248
	수익금액	27	34	79	31	462	198
	수익률	3.18	3.82	5.00	6.03	4.00	4.66
축발 기금	여유자금	3,763	2,898	3,081	1,998	606	2,469
	수익금액	131	125	154	117	21	110
	수익률	3.49	4.32	5.00	5.86	3.38	4.45
쌀직불 기금	여유자금	1,021	438	238	318	1,026	608
	수익금액	35	17	11	13	9	17
	수익률	3.40	3.89	4.50	6.48	3.55	2.80
FTA 기금	여유자금	466	558	520	563	939	609
	수익금액	16	25	26	32	31	26
	수익률	3.34	4.40	5.07	5.72	3.32	4.27
재해 기금	여유자금	95	348	574	835	1,088	588
	수익금액	4	16	29	48	73	34
	수익률	3.88	4.66	5.04	5.78	6.72	5.79
양곡 기금	여유자금	352	890	837	1,029	1,146	851
	수익금액	11	32	38	57	34	34
	수익률	3.0	3.54	4.50	5.54	2.94	4.0
수발 기금	여유자금	1,439	1,132	1,048	780	590	998
	수익금액	55	50	54	46	24	46
	수익률	3.80	4.38	5.14	5.93	4.07	4.61
양식 기금	여유자금	-	-	-	-	37	37
	수익금액	-	-	-	-	1	1
	수익률	-	-	-	-	3.80	3.80
계	여유자금	9,527	8,953	10,320	9,563	20,497	12,971
	수익금액	330	374	513	535	783	579
	수익률	3.46	4.18	4.97	5.59	3.82	4.46

자료 :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주 : 평잔기준 산출액임



### 3. 수산발전기금 재원 조성의 한계 및 문제점

#### 1) 기금의 재원 조성의 문제점

- 2012년 기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가 있으며,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7조 2,429원 억임
  - 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임
  - 이 중에서 수산관련 기금으로는 수산발전기금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있음

<표 2-7> 2012년 운영계획기준 기금의 운용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11계획		'12계획	비율	순위
	당초	수정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859	25,859	26,157	36.1	1
◦ 농지관리기금	10,967	10,967	16,645	23.0	2
◦ 축산발전기금	6,415	6,415	7,370	10.2	3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8,795	8,795	2,185	3.0	8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34	4,134	6,270	8.7	5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61	1,561	2,629	3.6	7
◦ 양곡증권정리기금	6,215	6,215	4,383	6.1	6
◦ 수산발전기금	6,426	6,426	6,790	9.4	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1

- 2012년 기준 기금별 재원을 비교해 보면 수산발전기금은 6,790억 원으로 총 8개 기금사업 중 4번째를 차지하는데, 이는 종합적인 기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액이 적은 편으로 향후 설정될 장기적으로 발전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기금 편성의 기본방향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의 수급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특히 시장 개방 등에 대응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인

식품산업과 수산업을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수산물 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낚시 산업 등 수산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금의 사업과 같은 보조금 지급·용자 지원형태의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재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수산발전기금 규모 산정 방식에 있어 사업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수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에 따른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근거로 기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 2) 안정적 재원의 확보 문제

- 수산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기금이 설치될 당시 일부 예산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이관되면서 함께 전입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 중심인데, 이는 기금 설립 초기에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 따른 결과임
- 이후 수산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감척어선 및 국가어항토지매각대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재원에 포함시키는 등 재원 다양화를 모색하였음
  - 이를 통해 정부출연금 의존도를 축소시켜, 정부출연금은 '09년도 249억 원, '10년도 55억 원이었으며, '11년에는 공공자금예수금으로 510억 원을 지원받음
- 그러나 자체수입 5,362억 원은 기금운영비, 경상사업비, 용자사업비 등 총지출 6,621억 원의 2/3를 상회하고 있어 재원조성방법은 적절하지만 아직도 정부출연금이 높아 기금운영의 효율화로 정부출연금의 축소가 필요함
- 따라서 정부는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2-8> 수산발전기금 수입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 회수
	부담금	융자 원금 회수	재산 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기타	소계		
2009년	27,607	445,802	17,543	21,097	512,049	24,860	-	-	-	-	-	62,667
2010년	24,893	464,093	16,879	17,452	523,317	5,500	-	-	-	-	-	46,763
2011년	27,468	470,827	18,649	19,328	536,272	-	-	51,000	-	51,000	-	74,871

<표 2-9> 수산발전기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차입금 원금 상환	차입금 이자 상환	여유 자금 운용
	경상	융자	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소계				
2009년	68,809	482,705	551,514	-	-	-	-	1,299	-	-	46,763
2010년	40,380	459,085	499,465	-	-	-	-	1,243	-	-	74,872
2011년	49,503	501,319	550,822	-	-	727	727	1,447	-	-	109,147



### Ⅲ.

## 신규재원별 도입 가능성 검토

### 1. 수산물 수입관세

#### 1) 수입관세 현황

##### (1) 수산물 수입관세의 규모

○ 수산물 수입관세는 일부를 제외하면 10% 또는 20%를 적용받고 있음

<표 3-1> 수산물 수입관세율(관세법 별표1)

품명	세율	품명	세율	품명	세율	품명	세율
활어		소크아이 연어	10	조제 어류		달팽이	20
관상용의 것	10	기타	1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20	기타	
기타의 활어		기타 연어류		어류의 간과 어란	2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송어	10	송어	10	어류의 피레트	20	1. 연체동물	
뱀장어		대서양연어와 다뉴브연어	10	훈제한 어류		가. 진주조개	
1. 실뱅장어(양식용)	무세	기타	10	태평양연어	20	(1) 종파용	무세
2. 기타	10	넙치류		청어	20	(2) 기타	20
잉어	10	넙치	10	기타	20	나. 피조개	
참다랑어	10	가자미	10	건조한 어류		(1) 종파용	무세
남방참다랑어	10	서대	10	대구	20	(2) 기타	20
기타		기타	10	기타	20	다. 기타	20
1. 돔		다랑어		염장한 어류		2. 기타	
가. 치어(양식용)	무세	날개/긴지느러미 다랑어	10	청어	20	가. 우렁챙이	
나. 기타	10	황다랑어	10	대구	20	(1) 종묘	무세
2. 농어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우	10	멸치	20	(2) 기타	20
가. 치어(양식용)	무세	눈다랑어	10	기타	20	나. 기타	20
나. 기타	10	참다랑어	10	갑각류		기타	20
3. 기타	10	남방참다랑어	10	냉동한 것		해초류, 기타 조류	
연어류		기타	10	닭새우류	20	1. 냉장한 것	20
송어	20	청어		바닷가재	20	2. 냉동한 것	
태평양연어	20	청어	10	새우와 보리새우	20	가. 김	10
기타	20	대구	10	게	20	나. 기타	50
넙치류		황새치와 이빨고기		기타	20	3. 염장한 것	20
넙치	20	황새치	10	냉동하지 아니한 것		4. 건조한 것	20
가자미	20	이빨고기	10	닭새우류	20	5. 기타	20
서대	20	기타 어류		바닷가재	20	어류 간유, 분획물	
기타	20	정어리	10	새우와 보리새우	20	1. 상어 간유, 분획물	3
다랑어		해덕	10	게	20	2. 기타	3

<표 3-1> 수산물 수입관세율(관세법 별표1)- 계속

품명	세율	품명	세율	품명	세율	품명	세율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	20	검정대구	10	기타	20	어류 유지, 분획물	3
황다랑어	20	고등어	10	연체동물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도우	2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굴		1. 경유와 그 분획물	3
눈다랑어	20	뱅장어	10	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 기타	3
참다랑어	20	농어	10	가. 굴치패		어류	
남방참다랑어	20	민대구	10	(1) 종패용	무세	연어	20
기타	20	기타	10	(2) 기타	5	청어	20
청어	20	간과 어란	10	나. 기타	20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 스텝 또는 스프렛	20
대구	20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2.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도우	20
기타 어류		신선 또는 냉장한 것		가리비과의 조개		고등어	20
정어리	20	황새치	2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멸치	20
해덕	20	이빨고기	20	기타	20	기타	20
검정대구	20	기타	20	홍합		기타 조제/저장어류	20
고등어	20	냉동한 피레트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캐비아, 대용물	20
곱상어, 기타 상어	20	황새치	10	기타	20	조제/저장 기타	
뱅장어	20	이빨고기	10	갑오징어		게	20
황새치	20	기타	1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새우와 보리새우	20
이빨고기	20	기타		기타	10	바닷가재	20
기타	20	황새치	10	문어		기타 갑각류	20
간과 어란	20	이빨고기	1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기타	20
냉동어류		기타	10	기타	20	수프·브로드, 조제품	
태평양연어						1. 어류의 것	30

○ 최근 5개년의 평균 수산물 수입관세는 4,403억 원으로, 이를 관세청의 관세징수액과 대비하면 4.5%를 차지함

<표 3-2> 관세징수액의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관세(A)	94,1157	87,757	91,691	106,663	109,901	98,034
내국세	323,228	425,572	406,835	452,197	532,331	428,033
총징수액	397,335	513,323	498,526	558,860	642,232	522,055
수산물수입관세(B)	4,070	4,189	4,328	4,478	4,950	4,403
B/A	4.3	4.8	4.7	4.2	4.5	4.5

(2) 수산물 수입관세의 사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관세액의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음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별표 1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과 ...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 <개정 1997.4.10, 2006.12.26>
-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평균 26,129억 원으로 2011년의 경우 전체예산 세입의 38.3%를 차지하며, 이 중 수산물 관세는 5.7%임
- 법정 전입금의 경우는 농수산물 관세액이 평균 95.6%를 차지하는데, 농수산물 관세액 중 수산물 관세액의 비중은 17.4%를 차지함

<표 3-3>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법정 전입금 합계 (A)	20,537	21,518	23,424	26,363	27,027	30,591	33,443	26,129
농수산물 관세액(B)	19,987	20,948	22,920	25,849	26,501	29,998	27,573	24,825
농산물	9,824	9,826	10,854	12,210	12,661	14,519	12,907	11,829
축산물	6,444	6,990	7,996	9,450	9,512	11,001	9,716	8,730
수산물(C)	3,719	4,132	4,070	4,189	4,328	4,478	4,950	4,276
기타	550	570	504	514	526	593	5,870	1,304
B/A	97.3	97.4	97.8	98.1	98.1	98.1	82.4	95.6
C/B	18.6	19.7	17.8	16.2	16.3	14.9	18.0	17.4

주 : 기타는 배합사료, 축산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것임

- 2011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은 44,566억 원이며, 이 중 구조개선사업계정은 33,173억 원으로 74.4%임
  -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011년에 7,388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35,423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지출은 일반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이 있으며,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전출금, 광특회계전출금, 공자기금원리금 상환액임

- 수산물 관세징수액 중 구조개선사업계정의 일반지출 중 수산업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약 4,000억 원 이상의 관세액 전액이 수산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의 기금전출금은 2011년에 4,581억 원이며, 2012년에는 15,209억 원으로 10,628억 원이 증액됨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기금전출금이 6,237억 원이 감소하면서 실제 증가된 기금전출금은 4,391억 원임
  - 기금별로 보면, 정부출연금을 받는 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5,323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2,137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350억 원)임
  - 이 중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정부출연금이 전년 대비 2,3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전출액은 공자기금원리금 상환액 등임
- 수산물발전기금은 2012년에 전년 대비 5.7%인 3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여유자금 회수가 주된 재원임

<표 3-4>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증감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11계획		'12계획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	(B-A)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859	25,859	26,157	298	1.2
◦ 농지관리기금	10,967	10,967	16,645	5,678	51.8
◦ 축산발전기금	6,415	6,415	7,370	955	14.9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가)	8,795	8,795	2,185	-6,610	-75.2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34	4,134	6,270	2,136	51.7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61	1,561	2,629	1,068	68.4
◦ 양곡증권정리기금(나)	6,215	6,215	4,383	-1,832	-29.5
◦ 수산물발전기금	6,426	6,426	6,790	364	5.7
합계	70,372	70,372	72,429	2,057	2.9



## 2) 농수산물 수입관세의 기금 편입 사례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11년 11월 26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2년 1월 17일 공포하였음 (시행 2013. 1. 1)

<표 3-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신설)
제10조의 7 (소상공인진흥계정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의8(재원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li> <li>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li> <li>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li> <li>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li> <li>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li> <li>6. 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ol>
제10조의 9 (계정의 사용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li> <li>2.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li> <li>3.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li> <li>4.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li> <li>5.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li> <li>6.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li> <li>7. 신사업 모델의 개발·보급 등 정보제공 지원</li> <li>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li> <li>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연구</li> <li>10. 소상공인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 교류 지원</li> <li>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li> <li>1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관한 사항</li> <li>13.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li> <li>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li> <li>15. 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li> <li>1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li> </ol>

- 개정안의 주요 내용(신설)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진흥 계정'이 별도로 설치됨
  - 관세 징수액과 복권 수익금 등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정부가 출연해 마련하는 것으로, 2001년 기준으로 전체 관세 수입은 64조 원이며, 이 금액의 3%는 약 1조 9천억 원임
  - 지원 논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따른 세계적 유통업체, 프랜차이즈와 그 프랜차이즈와 연계된 대기업에 대응한 골목상권 지원임
- 소상공인진흥계정의 기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 축산발전기금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에 의거하여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됨
  -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차입금
  - 「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대체 초지 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 최근 축산발전기금 재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음
  - 첫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의 확대
  - 둘째, 축산물 수입관세의 편입(목적세로 전환)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축산물 수입관세는 총 4조 4,200억 원이며, 이 중 축산부문 지원액은 평균 31%인 평균 2,812억 원임
  - 지원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2010년 각각 2,049억 원, 1,469억 원, 2,121억 원, 2,848억 원, 5,573억 원임

- 2012년 2월,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축산물 수입 관세의 축발기금 전입 비율을 상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 건의문에 의하면, 축산물 수입관세 중 25~30%만 축산부문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어 수입 관세 중 축산발전기금 전입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것임
  - 관련 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가 축산 분야인 점과 축발기금 재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수입축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 일부를 축발기금으로 편입, 축산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3) 수산물 수입관세의 수발기금 편입 필요성

- 동시 다발적 FTA의 체결과 WTO/DDA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수산물 수입은 1997년에 국내 수산물 총 공급량의 24.5%였던 것이 2009년에는 32.6%로 8.1%p가 증가함
  - 수입수산물은 2008년부터 4백만 톤 대에 진입하여 2011년에는 484백만 톤, 4,192백만 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15.1%의 성장을 기록함

<표 3-6> 수입수산물의 연도별 누적성장률(CAGR)

구 분	중량(천톤)	금액(백만불)	단가(달러)	CAGR(물량)	CAGR(금액)
2002년	1,186	1,884	1.6	-	-
2003년	1,239	1,961	1.6	4.4	65.3
2004년	1,281	2,261	1.8	3.9	38.1
2005년	1,256	2,384	1.9	1.9	26.2
2006년	1,377	2,769	2.0	3.8	23.6
2007년	1,392	3,056	2.2	3.2	20.8
2008년	4,187	3,097	0.7	23.4	17.3
2009년	4,080	2,895	0.7	19.3	13.6
2010년	4,716	3,458	0.7	18.8	14.3
2011년	4,846	4,192	0.9	16.9	15.1

주 : 2008년부터 소금 등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자료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7001](http://www.fips.go.kr:7001))

- 국내 수산물시장에서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수입수산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등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수입수산물 관세액의 전액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 관세액이 국산 수산물의 수출과 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는 비중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수산물 수출과 소비 촉진에 대한 사업은 없고, 농특회계 전입에 따라 수산분야에 기여하는 바는 불명확함
-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은 수산물 수입에 따라 전액 발생되는 것으로, 사용처를 수산부문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및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산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수산물의 수출 진흥과 사용·소비 촉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세액을 수산물발전기금으로 편입 추진함
  - 수산업법 제79조(기금의 용도)에서 수산물발전기금은 농안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수산물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액은 어업인 등의 지원, 특히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수산물 수출 진흥에 사용되는 것이 법 성격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정책 지원이 기금사업 중 우수수산물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 우수수산물지원사업의 목적은 ‘WTO-DDA 및 FTA 등 대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수출기반 구축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 임

- 신규기금 도입에 따른 사업은 재원과 사업간의 합치성을 고려 기사업 편입 또는 관련신규사업의 도입을 추진함
  - 기사업 편입 방향(안) : 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유통협약자조금 지원, 수산업관측 사업), 수산물수매지원, 우수수산물지원, 가공시설 및 운영, 해외수산물수출투자 등
  - 신규사업 도입 방향(안) : 수산물수출 촉진을 위한 제품개발사업(10대 수출품목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조사 및 해외 홍보사업), 국산수산물 소비촉진사업 등

#### 4) 수입관세의 편입 방안

- 수산업법 제77조의 기금의 구성과 관련해 재원 종류를 수정함
  - 본 조문 내에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일부를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조문을 추가
  - 이 때 신규구성재원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도입시 필요한 경우 수산발전기금 용도와 관련된 내용의 추가 검토가 요구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조항 중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수정함
  - 본 조문 내에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의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되, 수입수산물 관세액의 일부는 수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고 수정함

<표 3-7> 수입관세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관세액 (억 원)	2,840	3,422	3,694	3,998	4,645	4,645	4,645	4,645	4,645	4,645
1%	2,840	3,422	3,694	3,998	4,645	4,645	4,645	4,645	4,645	4,645
3%	8,520	10,266	11,082	11,994	13,935	13,935	13,935	13,935	13,935	13,935

##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 1)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 IUU 단속 어선·어구·어획물 공매처분금은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를 위반한 선박이 소지하는 어획물을 공매처분하는 제도임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항만국 검색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증명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 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
  -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 금지 또는 어획물의 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음
    - ※ 항만국 검색 및 조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시행령 제19조)
    - ※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 조치사항 등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시행규칙 제23조)
-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을 부과함
  -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등은 몰수하고,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법 제35조)
- 2006년 3월 3일 검역검사본부에서 부산소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불법 어획물인 메로 258.7톤을 확인하고 전채금지 처분을 내림
  - 어획물의 장기 보관에 따른 상품성 저하, 국가가 수행한 행정 비용 및 장기간의 법적 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09년 1월 29억 원에 공매처분

하였고, 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 26억 원 농림수산식품부가 보관·예치 중임

- 피고발인에 대한 유죄가 의심되나 소재가 불명하여 일단 기소중지를 한 상태이므로 당장 몰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처분후 정부가 보관·예치중임

(2) 문제점

- 항만국 검색 대상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으로 국한되어 있음
- 항만국 검색시 어획물·장부·서류 등의 검사 및 관계인의 질문, 선박 입출항 금지 또는 어획물 양륙·전재 제한에 불응할 경우에만 처벌가능이 가능하여 모든 IUU 위반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 항만국 검색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검색 곤란 및 검색결과에 대한 조치가 곤란함
  -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는 항만국 검색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적극적인 검색 뿐만 아니라 검색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
-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상 어획물 몰수를 위해서는 먼저 형사절차가 필요하나 형사고발 등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
  - 불법어획물 등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몰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짐
-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전재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은 하주에게 있어 매각대금의 처분이 곤란함
  -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하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 전문가들은 10년 정도 보관 후 활용방안 검토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2) 공매처분금 수발기금 귀속 가능성

- 공매처분금은 불법으로 인하여 우리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수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기금으로 편입 가능성이 있음
  - 수발기금의 재원은 수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은 동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이 가능함
- 특히 IUU 위반으로 인한 공매금은 이미 동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된 수산물공매납입금 및 공유수면공매납입금과 같이 공매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동 기금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함

## 3) 수발기금 도입 방안

- 항만국 검색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과 검색 강화와 공매처분금 확대
  - 원양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검색에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여 공매처분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필요
  - 법률에 의한 항만검색 강화를 통하여 IUU 위반 어획물, 어선 및 어구 등 공매처분 대상을 확대
- 수산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공매처분금 수발기금화 근거 조항 신설
  - 수산업법에서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IUU 위반 어선·어구·어획물에 대한 공매처분금을 수발기금으로 편입하는 근거 마련
  - 원양산업발전법에서 IUU 위반 어선·어구·어획물 공매처분금 수발기금 귀속 조항 및 용도 조항 신설

<표 3-8> IUU 단속 어선·어구·어획물 공매처분금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IUU 위반 공매처분금	2,600	2,000	2,000	2,000	2,000



### 3. 불법어업 담보금

#### 1) 불법어업 담보금(중국어선) 현황

##### (1) 불법어업 단속 현황

- 우리나라의 중국어선 단속(나포) 현황은 2011년 현재 총 537건으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하였음

<표 3-9> 중국어선 위반조업 단속 현황

단위 : 척

구 분	합계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2007년	494	-	494
2008년	432	16	416
2009년	381	15	366
2010년	370	61	309
2011년	537	191	346
2012년.2.28	130	89	41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내부자료

- 최근 중국어선에 의한 한국측 EEZ에서의 불법조업이 큰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음
- 불법어업에 따른 나포시에도 담보금만 납부하면 즉시 풀려나는 한편, 어획물·어구도 반환받을 수 있어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EEZ 내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국내 EEZ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국내 어업인의 어구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룸
- 또한 우리나라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에 대한 해상폭력 행사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실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징수한 담보금은 2011년 현재 144억 원으로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3-10> 유형별 위반어선 척수 및 담보금 징수 현황

단위 : 척, 백만 원

구 분	단 속 실 적				담보금 징 수
	계	영해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2007년	494	52	70	476	4,519
2008년	432	42	76	314	4,535
2009년	381	49	109	223	5,532
2010년	370	43	129	198	7,816
2011년	537	32	171	334	14,416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내부자료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T/F 설치·운영, 담보금 상향 등의 계획을 마련하였음
  - 담보금(벌금)의 상향 및 상습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 가중 부과,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어획물·어구 몰수 추진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2) 불법어업 단속 근거 법률 현황

- 외국어선(중국)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 근거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어업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제한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
  -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제3조)
  - 외국어선이 법률사항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의 고지 가능(제23조)
    -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해 담보금을 고지할 수 있음
    - 이 때 담보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제23조 제5항)

-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시행령 제9조)

○ 담보금은 법률적으로 ‘민법에서, 담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돈’을 의미함<sup>1)</sup>

-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함(제23조 제4항)
-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됨(법 제24조 제1항, 2항)
  -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됨(법 제24조 제3항)
-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해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함
-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 환부하여야 함(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6조)

1)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 (3) 불법어업 담보금의 활용

- 2011년 현재 징수된 담보금은 14,416백만 원으로 201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담보상한 기준은 1억 원(법무부, 2011.12월 7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이나, 최근 2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확보 검토 추진 중임<sup>2)</sup>
  - 또한 상습적 불법어선에 대한 가중부과 규정 신설(1.5배 가중부과, 대검 내부기준 변경)로 범칙금의 강화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음
- 징수된 담보금은 EEZ 어업법에 근거(제24조)해 전액 국고로 귀속됨
  -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됨(제24조)

## 2) 담보금의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용한 NLL 주변수변을 중심으로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빈발한 실정임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유형은 무허가 어선 조업, 허가어선의 제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조업일지관련 어장용적도, 망목위반 등) 등이 대표적임

2) 참고로 일본의 경우 1.5억 원, 중국은 0.9억 원, 미국은 2.3억 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 2011.12.26)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해당 어장의 경우 수산자원 손실, 어구 피해 등 어업경영체의 피해가 막대함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반면, 불법어업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존재함
  - 수산자원 남획, 어업경영체의 경영 불안정, 조업 불안전성 등에 관련된 직접적 사업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러한 가운데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담보금은 법률에 근거해 국고로 귀속됨
  - 국고 귀속 이후 배속 현황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 본 담보금은 수산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징수금의 사용처를 수산부문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및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
  -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으로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외에 과징금이 포함됨
    -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는 동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편입함
  -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구제급여 지급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으로서 가산금 및 징수금 등이 포함됨
    -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서는 동법 제 34조 및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가산금 및 징수금을 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국내 수산자원의 보전과 어업경영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불법어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의 편입을 추진함
  - 수산발전기금은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됨(수산업법 제76조)
  -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경영체의 피해 지원은 법률의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항목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세부 용도는 14개 중 ‘어업경영기금의 용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과 합치함

- 담보금의 기금편입 이후 관련사업의 수행으로 기금사업의 존치 논란 최소화 모색이 필요함
  - 신규기금 도입에 따른 사업은 재원과 사업간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 편입 또는 관련 신규사업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사업 편입 방향(안) : 영어자금(용자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경상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경상사업)<sup>3)</sup>, 생계소득 및 안정, 어업인후계자 육성, 안전조업 목적의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사업 등
  - 신규사업 도입 방향(안)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사업(예 : 인공어초 설치 등), 어업경영 안정화 사업(예 : 어선리스사업 등)

### 3) 담보금 귀속 방안

- 수산업법 제77조에서는 기금의 구성과 관련해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 재원(총 13종) :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3) 폐어망·그물 등 유실어구의 수거

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기금운용 수익금 등

- 따라서 본 조문 내에 불법어업 담보금을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조문을 추가할 수 있음
  - 제77조(기금의 조성) 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담보금을 추가 적시함  
(예) 제77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 1~13. (현행과 같음)
    - 14. (신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에 따른 담보금
  - 이 때 신규조성재원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도입시 필요한 경우 수산발전 기금 용도와 관련된 내용의 추가 검토가 요구됨
- 동시에 EEZ 어업법·시행령 중 국고 귀속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 법률 시행령 등에서 명시된 국고 귀속 조문의 수정이 요구됨
- 과거 불법어업 담보금 징수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은 이하의 표와 같이 산출됨
  -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증가 현상을 고려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표 3-11> 불법어업 담보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불법어업 담보금	4,519	4,535	5,532	7,816	14,416	15,858	17,443	19,188	21,106	23,217

주 : 2011년 징수액을 기준으로 매년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1) 현황 및 문제점

#### (1) 유어장 지정 현황 및 낚시산업 규모

- 우리나라의 관리 낚시터는 바다와 바닷가에서 시설된 유어장<sup>4)</sup>과 내수면에 위치한 내수면 낚시터가 있음
- 현재 2010년 기준 유어장은 168개소로 유료낚시터 98개소, 체험어장 68개소, 기타 2개소임
- 이 중 유료 낚시터는 98개소이며,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59개소(546h)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14개소, 경북이 11개소임

<표 3-12> 시도별 유어장 지정현황(2010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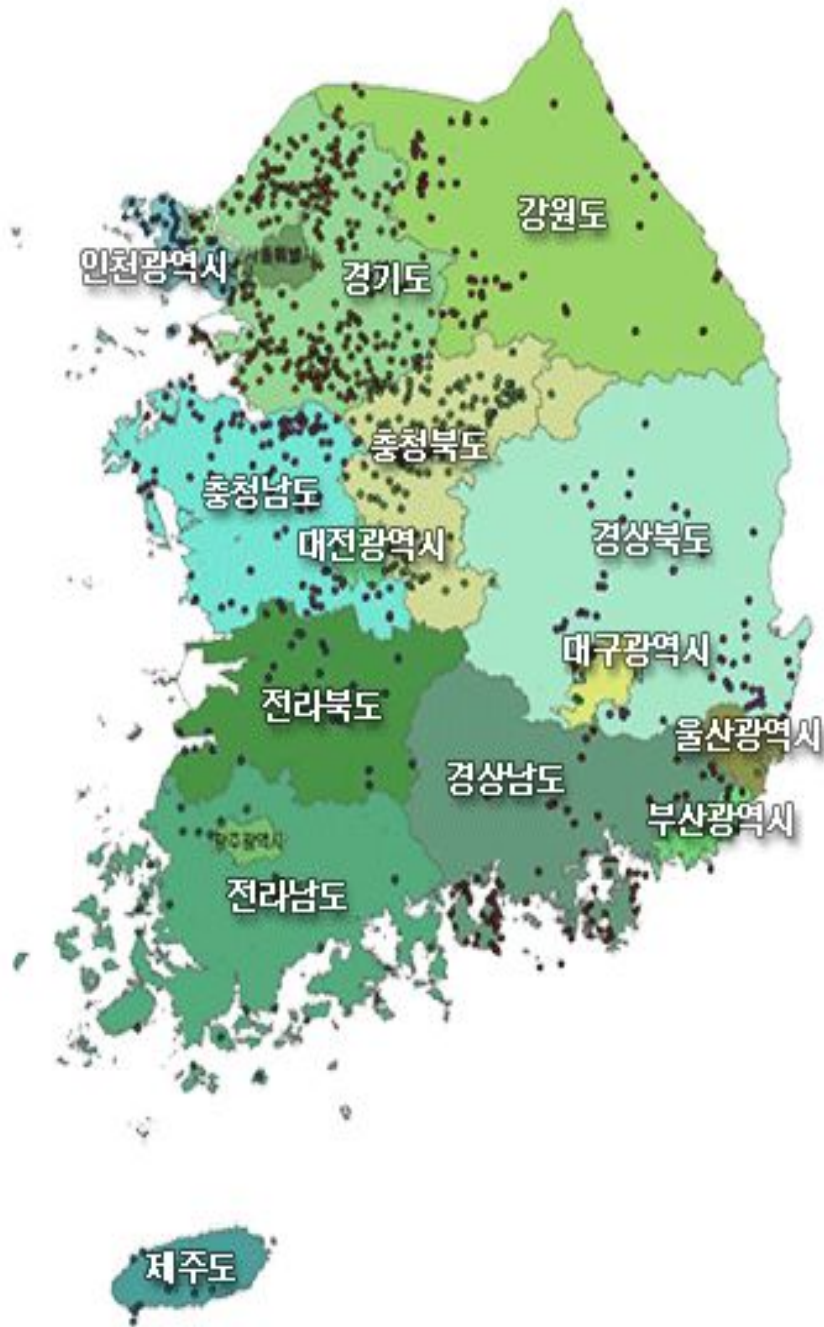
단위 : 개소, ha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면적)	168개소 (2,142)	2 (34)	2 (2)	17 (469)	4 (166)	22 (86)	3 (90)	20 (226)	13 (33)	77 (801)	8 (235)
유료낚시터 (면적)	98개소 (896)	2 (34)	2 (2)	(-) (-)	(-) (-)	8 (1)	(-) (-)	14 (123)	11 (28)	59 (546)	2 (43)
체험어장 (면적)	68개소 (1,285)	(-) (-)	(-) (-)	17 (469)	4 (166)	14 (86)	1 (10)	6 (103)	2 (6)	18 (255)	6 (192)
기타 (면적)	2개소 (80)	(-) (-)	(-) (-)	(-) (-)	(-) (-)	(-) (-)	2 (80)	(-) (-)	(-) (-)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탈

4) 수산업법에 따른 유어(遊漁)의 정의를 살펴보면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함.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면허·허가 받은 어업 중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운영되는 유어장은 유료낚시터와 체험어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1> 우리나라 낚시터 및 유어장 분포도

<표 3-13> 2010년 하반기 낚시어선 규모별 신고 척수

단위 : 척, %

구분	계	비중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060 (1,143)	100.0 (28.2)	233 (85)	234 (19)	71 (44)	129 (33)	325 (42)	986 (365)	220 (67)	545 (256)	145 (4)	979 (228)	193 (0)
1톤 미만	86 (69)	2.1 (1.7)	4 (2)	3 (2)	2 (1)	0	9 (8)	17 (16)		46 (38)	3 (1)	2 (1)	
1~2	814 (527)	20.0 (13.0)	86 (58)	19 (2)	29 (20)	8 (8)	51 (22)	91 (83)	27 (9)	198 (171)	28 (3)	270 (151)	7
2~3	674 (259)	16.6 (6.4)	37 (17)	28 (6)	15 (12)	10 (10)	112 (7)	127 (105)	27 (16)	79 (43)	23	200 (43)	16
3~4	659 (170)	16.2 (4.2)	32 (5)	39 (8)	17 (11)	19 (10)	79 (5)	166 (85)	25 (16)	37 (2)	14	166 (28)	65
4~5	776 (80)	19.1 (2.0)	44 (2)	51 (1)	5	33 (5)	38	238 (56)	42 (10)	53 (2)	45	178 (4)	49
5~6	116 (3)	2.9 (0.1)	3	10		2	12	45 (1)	7 (2)	3	5	17	12
6~7	249 (16)	6.1 (0.4)	2	16		8	14	102 (2)	38 (14)	8	9	35	17
7~8	234 (9)	5.8 (0.2)	6	20	1	14	4	99 (9)	24	27	9	25	5
8~9	53 (2)	1.3 (0.0)	3	6		3	0	9 (2)	2	10	4	12	4
9~10	399 (8)	9.8 (0.2)	16 (1)	42	2	32	6	92 (6)	28	84	5	74 (1)	18

주 : ( ) 안은 선외기 설치어선 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 낚시산업의 사업규모는 최소 1조 350억 원에서 최대 1조 4,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sup>5)</sup>

- 해당 연구의 추정 결과에는 낚시장비 구입비, 낚시터(어선) 이용요금 등 일반 소비성 지출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낚시산업의 규모는 현재의 추정결과를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강중호 외,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표 3-14> 낚시산업의 규모 추정(2008년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낚시용품 제조업	낚시용품 도·소매업	낚시터 운영업	낚시 어선업
공식통계	3,104	-	330	-
비공식자료 (선행연구 등)	-	-	-	838
설문조사	1,278	7,904~8,172	2,086	-
최소치~최대치 구간	1,278~3,104	7,904~8,172	330~2,086	838
<b>산업규모</b>	<b>최소 1조 350억 원~최대 1조 4,200억 원</b>			

주 : 설문조사는 각 업체별로 2008~2010년 매출액을 조사하였으나, 공식통계는 2008년 기준이므로 산업규모 추정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강중호 외,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표 2-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 낚시 인구는 주5일제 확대·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가·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레저활동인 낚시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 낚시 인구 추정 : ('95) 325만 명 → ('00) 500만 명 → ('04) 573만 명 → ('10) 652만 명

(2) 낚시 관련 법률적 문제점

-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58호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5개 부처 34개 법령을 통해 분산·관리되던 낚시 관련법이 통합되고, 관리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됨
- 동법 제정으로 낚시어선법이 폐지되어 이관되고, 내수면어업법 등에서도 낚시 관련 조항은 동법을 적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부처에 각종 규제들이 산재해 있음

<표 3-15> 낚시 관련 정부부처 및 주요 관련 사항

구분	주요 법령	관련사항
농림수산식품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신설)	낚시 관련 제도의 체계화 건전한 국민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발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내수면어업법	낚시어선 및 내수면 낚시터, 유어장 관리
	수산업법	낚시 대상 수산자원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낚시를 생활 체육의 입장에서 인식
국토해양부	항만법 등	항만 등 특수 지역에서의 낚시 제한 나R제를 해양 스포츠의 입장에서 인식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낚시 제한구역 및 낚시 금지구역 설정 베이스 등 유해 어종에 관한 사항
지식경제부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낚시 관련 업종만 특별 취급하지는 않음)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등	낚시어선 등 바다에서 이뤄지는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규제

자료 : 전게서.

- 낚시 장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영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함
  - 이에 대한 법률은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이 있음
  - 이 중 「낚시어선업법」은 폐지되었고, 「내수면어업법」은 개정됨

<표 3-16> 낚시장소에 대한 법률 및 관련 현황

구분	관련 법령	제도
바다 및 내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바다	유어장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수산업법)	지정
	낚시어선	낚시어선업법(폐지)
내수면	내수면 낚시터 내수면어업법(개정)	신고

자료 : 전게서.

- 그러나 법률에 의한 낚시 장소 이외에도 강·계곡·저수지·갯바위 등 다양  
한 지역에서 낚시가 이뤄지고 있음

2)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 낚시 관련법이 통합되고, 관리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되는 등 낚시산업이 수산업의 한 범위로 간주되고 있음
  - 점차 유어낚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낚시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 유어낚시산업은 이제 단순한 레저활동을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 국가에서는 유어낚시산업을 수산업의 범주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낚시산업·서비스 선진화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6년까지 782억 원의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제도적 기반구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 쾌적한 낚시공간 조성 : 낚시터 안전성 확보 및 환경개선
  - 자율적 발전기반 조성 : 통합 낚시단체 구성 및 낚시용품 시장 확대 등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 교육·홍보 확대 및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등
- 한편 자율적 발전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유어부담금 조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
  - 현재 유어부담금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방안 검토 중임
  - 즉, 수산자원 이용에 대해 수익자인 낚시인들의 비용부담을 통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표 3-17> 낚시관리 및 육성법 관련 수수료

구분	내 용	소관부처
1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지자체
2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3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 신고	
4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5	우수낚시터의 지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과 다름없는 유어낚시 활동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 유어낚시는 자연자원인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으로서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생태에 어업 못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됨
  - 자원에 대하여 어업과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유어낚시 또한 어업과 같은 자원관리를 하여야 함
- 유어낚시산업의 발전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에 필요함
  - 이처럼 산업적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어낚시 활동에 대하여 생태 및 자원관리를 위한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동 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목적에도 부합됨
  - 특히 유어낚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업법의 제76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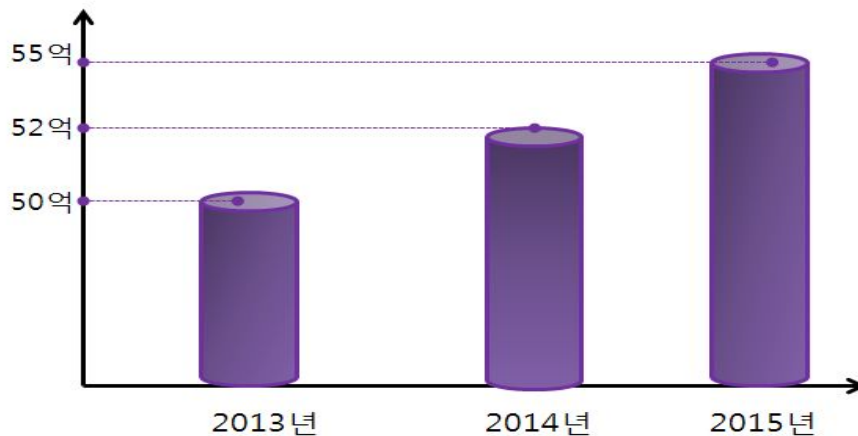
### 3) 수발기금 도입 방안

- 기금의 구성과 관련해 재원 종류를 규정한 수산업법 제77조에 유어낚시 자원부담금을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조문을 추가함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유어낚시자원부담금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제48조(유어낚시자원부담금의 부과·징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어낚시 자원관리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어낚시업자에게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48조의 1(부담금의 산정기준)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은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연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산정한다



<그림 3-2> 유어낙시자원부담금의 수발전기금 도입 방안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 낙시어선/낙시터의 매출 추정액은 4,797억 원이며, 매년 매출이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를 낙시어선/낙시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할 경우 수산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은 다음과 같음
  - 신규로 도입되어야 할 부과금으로 법률 개정 등 제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는 2013년부터 편입되는 것으로 산정했을 때 2013년 재원은 50억 원, 2014년 52억 원, 2015년 55억 원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3> 수산발전기금 귀속 유어낙시자원부담금 추정 재원

- 일례로 지식경제부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21조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여 특정물질의 배출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기금은 대체물질의 개발, 특정 물질의 배출 억제,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21조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설치, 제24조의 2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함(제 24조의 4 부담금의 산정기준)

<표 3-18>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낚시어선/낚시터 매출추정액	479,720	494,112	508,935	524,203	539,930	556,127	3% 증가 가정
<낚시어선/낚시터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 1안	4,797	4,941	5,089	5,242	5,399	5,561	매출액 대비 1%
- 2안	9,594	9,882	10,179	10,484	10,799	11,123	매출액 대비 2%
- 3안	14,392	14,823	15,268	15,726	16,198	16,684	매출액 대비 3%
- 4안	19,189	19,764	20,357	20,968	21,597	22,245	매출액 대비 4%
- 5안	23,986	24,706	25,447	26,210	26,996	27,806	매출액 대비 5%

주 : 기 마련 부과금이 아닌 신규로 도입되어야 할 부과금으로 법률 개정 등 제반 작업에 시간이 소요 되므로,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는 2013년부터 편입되는 것으로 산정



## 5. FTA기금 전입금

### 1) FTA 관련 기금 및 사업 현황

#### (1) 법제도 현황

- 2004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4년 3월 22일 제정되고 동년 4월 1일 시행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년 10월 22일 이전
  - 법 제10조(기금의 설치)에서 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토록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년 10월 22일 이후
  - 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에서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수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삭제함
  - 따라서 FTA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FTA 이행지원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2) FTA기금과 FTA사업

- 기금설치 및 위탁기관
  - 2004년 FTA법 제정과 동시 설립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 사업규모 및 내용
  - 2009년 4,160억 원, 2010년 4,405억 원, 2011년 4,134억 원

- 2011년 2012년 한·미 및 한·EU FTA기금 사업비는 3,6336억 원 5,630억 원임
  - 직접피해보전, 품목별 경쟁력 강화(축산, 원예, 식량), 근본적 체질강화(맞춤형 농정추진, 신성장동력 확충 등)임
  - 농업분야 FTA사업비는 2011년 1조 5,237억 원, 2012년 2조 75억 원이고, FTA기금사업비 비중은 24% 및 28%임
- ※ FTA기금에는 수산분야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2011년 10월 22일 법 개정전에는 수발기금에서 FTA 관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임

○ 기금조성과 사업의 관계

- FTA 기금에서는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비에 맞게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FTA기금의 운용액은 기존의 농축산업 관련 FTA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음

(3) 수발기금과 FTA사업

○ 수산분야 FTA사업

- 수산분야 FTA사업은 2011년 999억 원, 2012년 1,186억 원으로 한·미FTA 대책사업으로 2011년 시작함
- 농어업 FTA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수산분야 FTA사업비는 2011년 6.2%, 2012년 5.6%에 불과함
- 수산분야 FTA사업비는 수발기금, 농특 및 광특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발기금 사업비는 2011년 191억 원(19%), 2012년 194억 원(16%)임

○ 한·중·일 FTA 등 향후 전망

-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 FTA사업비는 2020년까지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함
- 농업분야의 사례로 볼 경우 수산분야 FTA 사업비중 FTA기금으로 24%

내지 28%를 감당해야 할 경우 약 2,400억 원에서 2,800억 원의 FTA기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3-19> 수산분야 FTA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사업명	2011년	2012년
합 계	999	1,186
○ 피해보전직불금(수발기금)	15	30
○ 원양어업관리회사(수발기금)	30	3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수발기금)	10	10
○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수발기금)	136	124
○ 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농특, '12신규)	-	1
○ 환경친화적(고밀도)부표지급(농특)	15	
○ 생분해성어구보급(농특)	35	50
○ 조건불리수산직불제(농특, '12신규)	-	18
○ 토속어류산업화센터(광특)	20	20
○ 내수면양식단지조성(광특)	5	
○ 연근해어업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과제(농특)	-	5
○ 총허용어획량(TAC)제도운영(농특)	17	-
○ 친환경배합사료지원(농특,광특)	55	85
○ 자율관리어업육성(농특)	128	131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농특)(추가대책)	533	587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광특, '12신규)	-	72
○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광특, '12신규)	-	3
○ 수산금융이차보전(농특,12신규,국회증액만 해당)	-	20

## 2) FTA기금의 수발기금 귀속 당위성

- 한·미FTA 체결 이전까지만해도 FTA로 인한 수산피해는 미미하다고 간주하여 수산분야 FTA사업 추진이 거의 없었으나 향후 FTA 수요 급증이 예상됨
  - 한·미 FTA체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 FTA사업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산분야 FTA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기금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FTA기금에서는 수산분야 사업을 위한 기금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기금 확충이 필요함
  - 현행 FTA기금사업에는 수산분야가 제외되어 있고, 이미 기존 농축산업 분야 FTA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현행 기금으로는 추가적인 수산사업의 추진이 곤란함
  - 따라서 수산분야 FTA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확충이 필요함
- 농업분야와 차별화된 재원 확보 및 사업수행이 필요함
  - 농축산업과 수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많은 차이점이 있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의 차별화가 요구됨
  - 특히 기금의 운용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도 수산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발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수산분야 FTA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수발기금으로 전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FTA기금 수발기금 귀속 방안

- FTA 수산사업의 발굴 및 기금 확보
  - 한·미 및 한·중·일 FTA 대책을 위한 수산사업을 발굴하여 현행 FTA기금 사업으로 확정
  - FTA 수산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 법제도 개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항을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 다만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은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운용한다.” 로 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제1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개정

<표 3-20> FTA기금 전입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FTA 수산사업	99,900	118,600	150,000	200,000	300,000	400,000
20%			30,000	40,000	60,000	80,000

## 6. 감척어선 매각대금

### 1) 어업구조조정사업 현황

- 우리나라의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1994년부터 추진, 일반감척과 특별감척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 어업구조조정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 및 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3-21> 어선 감척기본계획 및 어선감척 시행계획

구 분	계획주체
근해어업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시도지사

- 일반감척의 경우 1994년부터 2011년(잠정)까지 총 1.6조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총 17,188척이 처분되었음
  - 연안어선 : 2011년까지 총 5,553억 원의 투입으로 14,596척을 감척
  - 근해어선 : 2011년까지 총 3,681억 원의 투입을 통해 1,284척을 감척
- 특별감척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시행된 국제감척임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 원을 투입하여 1,308척의 근해어선이 국제감척으로 매입됨

<표 3-22> 연도별 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 원

구 분	합계	일 반 감 척			국 제 감 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4	척수	54	54	54	-	-	-	-	-
	금액	4,910	4,910	4,910	-	-	-	-	-
'95	척수	117	117	111	6	-	-	-	-
	금액	10,410	10,410	9,113	1,297	-	-	-	-
'96	척수	136	136	110	26	-	-	-	-
	금액	13,656	13,656	7,991	5,665	-	-	-	-
'97	척수	135	135	48	87	-	-	-	-
	금액	27,200	27,200	4,227	22,973	-	-	-	-
'98	척수	159	159	63	96	-	-	-	-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	-	-	-
'99	척수	730	78	-	78	652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9	36	73	31	31	369	-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
'01	척수	586	77	55	22	509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116	116	1,441	-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
'03	척수	60	60	16	44	-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
'04	척수	698	698	639	59	-	-	-	-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
'06	척수	1,598	1,598	1,598	-	-	-	-	-
	금액	50,278	50,278	50,278	-	-	-	-	-
'07	척수	2,922	2,922	2,836	86	-	-	-	-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	-	-	-
'08	척수	5,263	5,263	4,880	383	-	-	-	-
	금액	322,146	322,146	197,298	124,848	-	-	-	-
'09	척수	1,758	1,758	1,663	95	-	-	-	-
	금액	66,950	66,950	36,787	30,163	-	-	-	-
'10	척수	1,165	1,165	1,095	70	-	-	-	-
	금액	77,500	77,500	54,700	22,800	-	-	-	-
'11	척수	546	546	530	16	-	-	-	-
(잠정)	금액	34,000	34,000	30,000	4,000	-	-	-	-
합계	척수	17,188	15,880	14,596	1,284	1,308	1,308	8,885	52
	금액	1,567,719	923,449	555,309	368,140	644,270	572,982	69,906	1,382

주 : \* '11년도 사업은 진행중으로 감척수는 계획 척수임

- 어업구조조정 대상인 어선·어구의 장비매각대금은 2011년 기준으로 12억 원에 이르는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표 3-23>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정산현황

단위 : 척, 백만 원

구 분	사업물량		장비매각대금 (국비)
	계획	실적	
2008년	4,061	5,509	10,234
2009년	1,778	1,810	4,707
2010년	1,134	1,245	3,479
2011년	693	516	1,24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2) 감척어선 매각대금의 수발기금 귀속 필요성 및 방안

- 수산업법에서는 기금재원으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정의됨
- 이에 근거해 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어선 및 어구 매각대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됨
  - 연근해어업의 일반감척은 대상에서 제외됨
- 그러나 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은 1999년 시작되어 2002년에 실질적으로 종료되면서, 수산발전기금으로의 편입액은 전무함
- 향후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추진될 예정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법 제5조)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함
  - 근해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법이 개정·입법 예고되었는데, 2007년 7월 26일 이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함
  - 이에 2012년 중반 이후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일반감척사업으로 발생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이 편입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한 어선·어구 매각대금은 재원의 성격과 수산발전기금 용도 중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합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재원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의 감척어선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추정한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은 이하의 표와 같이 산출됨
  -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어선, 어구의 처리 원칙은 해체 또는 소각이며,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각 또는 양여,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공공사업 활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규정(법 제19조)하고 있음
  - 따라서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체계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처리 원칙에 의해 실제 어선 및 어구의 매각대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발전기금으로서의 신규편입 재원은 2011년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24> 감척어선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감척어선 매각대금	10,234	4,707	3,479	1,245	1,200	1,200	1,200	1,200	1,200

주 : 2011년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향후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7. 수산자원이용부담금

### 1) 현황 및 문제점

#### (1) 수산자원조성금

-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허가, 신고업자 및 공유수면 점사용자 등에게 부과하는 조성금임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징수대상 : 면허어업자, 면허어업 연장허가자, 허가어업자, 신고어업자, 한시허가어업자, 수산자원 회복 원상회복조치 명령대상 제외자, TAC 배분량 초과 어획한 자, 부수어획량 초과 어획한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공유수면의 준설·준설토장 조성·골재채취 및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자,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자
  - 징수면제대상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면허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공공기관의 공유수면 매립, 소규모 신고어업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면허자, 일정한 면적 또는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어업자
  - 용도 :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만 사용

<표 3-25>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구분	부과금액	비고
○ 「수산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 어류·패류 등 양식어업: 헥타르당 10만원 ○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부과금액×연장 받은 연수)÷10
○ 「수산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 연안어업·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패류형망어업·근해어업: 어선 톤당 5천원	○ 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

어업신고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간망어업·건망어업·들망어업·선인망어업·승망류어업·안강망어업·장망류어업·지인망어업·해선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li> <li>○ 밧줄식종요생산어업, 말목식종요생산어업, 뗏목식종요생산어업: 헥타르당 10만원</li> </ul>	속선을 포함함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요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요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종요생산어업은 200만원)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종요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요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헥타르당 5만원	
○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300만원</li> <li>○ 건당 250만원</li> <li>○ 건당 200만원</li> </ul>	○ 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0.1톤당 50만원	
○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 건당 500만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 헥타르당 21만 6천원	

비고 :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함

-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2011년 현재까지 징수한 건수는 총 36,521건에 금액은 130여 억 원에 이르지만 연간 징수액은 2011년 기준 약 13여 억 원에 불과함

<표 3-26> 수산자원조성금의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합 계	37,933	14,119	36,521	13,046	1,412	1,073	92.4
2011년	2,712	1,408	2,661	1,374	51	34	97.6
2010년	4,072	1,126	4,018	1,105	54	21	98.1
2009년	2,934	1,025	2,890	990	44	35	96.6
2008년	4,028	1,029	3,859	956	169	73	92.9
2007년	3,108	620	3,008	589	100	31	95.0
2006년 이전	21,079	8,911	20,085	8,032	994	879	90.1

- 지자체별 징수실적을 보면 전남과 경남이 가장 많은데 어업인 허가도 많고 공유수면 점사용건수가 많은 것이 원인임

<표 3-27> 지자체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 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1년	2010년까지 누계	
부산광역시	24	1,187	
인천광역시	9	474	
울산광역시	3	140	
경기도	11	168	
강원도	32	457	
충청남도	31	426	
전라북도	12	493	
전라남도	964	3,670	
경상북도	54	667	
경상남도	79	2,265	
제주특별자치도	155	1,724	
합계	1,374	11,671	

- 조성금 징수원별로 보면 2011년의 경우를 보면 어업허가가 약 8억 원, 어업면허가 약 5억 원으로 대부분 어업의 인허가가 부과하는 징수금에 많았고, 매립 등 공유수면 점사용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임

<표 3-28> 부담금 징수원별 대비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년 (A)	2011년 (B)	증감 (B-A)(%)	증감사유
<어업면허>	298	521	223	○ 부과기준 면허건수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증가
<어업허가>	805	804	△1	○ 부과기준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감소
<어업신고>	1	21	20	○ 부과기준 신고건수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증가
<매립면허>	1	10	9	○ 매립건수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증가
<기 타>	-	17	17	○ 준설사업 실시에 따른 부담금 징수액 증가

-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은 법률에 의거해 전액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종묘방류사업 등)에 사용됨
  - 즉,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조성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수발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과 배출부담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서는 할당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함
  -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 수질오염물질 1kg당 배출부과금은 매년 상승하였는데 2004년 3,000원에서 2011년에는 5,800원으로 증가하였음
  - 특징은 초과비율과 지역별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임

**<표 3-29> 오염총량초과부담금 산정방법 및 기준**

1.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text{오염총량초과부담금} = \text{초과배출이익} \times \text{초과율별 부과계수} \times \text{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text{감액 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초과배출이익} = \text{초과오염배출량} \times \text{연도별 부과금 단가}$$

나. 초과오염배출량이란 법 제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이나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times \text{배출기간}$$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 \text{할당오염부하량} \\ \text{일일초과오염배출량} &= (\text{일일유량} - \text{지정배출량}) \times \text{배출농도} \times 10^{-6} \end{aligned}$$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2. 일일유량은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총량을 말한다.

3. 배출농도는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배출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4.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일일유량} = \text{측정유량} \times \text{조업시간}$$

비고: 1.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2.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3) (1)이나 (2)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빼는 방법에 의한 산정

2) 배출기간

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이나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

기 시작한 날(배출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 다)부터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작업정지명령, 폐쇄 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다. 연도별 부과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2008	4,400원
2009	4,800원
2010	5,300원
2011	5,800원

비고: 2012년 이후에는 2011년도 부과금 단가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2011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3.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고: 초과율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	등급	Ia	Ib	II	III	IV	V	VI
	BOD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부과계수		1.6	1.5	1.4	1.3	1.2	1.1	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지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수·폐수 배출량 규모(m <sup>3</sup> )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10,000 이상	·최초의 위반행위: 1.8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7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6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5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4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3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2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1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값

- 한편 동법 제41조(배출부과금)에서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함
  - 배출금은 기본배출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분류하고, 배출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표 3-30> 초과배출부담금 부과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 물질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지 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질소	5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총 인	5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 정 유 해 물 질	페놀류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안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 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 화합물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폴리염화 비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트리클로로 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100  
 2. 유기물질의 오염측정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징수대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50만m<sup>3</sup>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기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 산정방법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임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 토지 등의 매수
-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해양생태계의 복원

(4)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해양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 징수대상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 산정방법 : 폐기물해양배출량(m<sup>3</sup>)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 부담금액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물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데, 폐기물은 1,100원/m<sup>3</sup>, 오염물질은 350원/L 임
  - 부담금 및 가산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음

<표 3-31> 해양폐기물 부담금액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부과금액
폐기물	1,100원/세제곱미터(m <sup>3</sup> )

비고 : 배출량이 세제곱미터 미만은 반올림한다.

2. 종류별 부과계수

폐기물 종류	부과계수산출기준			부과계수 (A×B×C)
	육해상배출비용차액 계수 (A)	오염도계수 (B)	정책계수 (C)	
분뇨	1.0	1.0	1.2	1.2
가축분뇨	1.0	1.0	1.2	1.2
폐수	1.2	1.0	1.1	1.32
분뇨처리오니(汚泥)	1.3	1.5	1.2	2.34
폐수처리오니	1.1	1.5	1.4	2.31
하수처리오니	1.0	1.5	1.0	1.5
원료동식물폐기물	1.2	1.5	1.0	1.8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1.1	1.5	1.4	2.31
수산가공잔재물	1.1	1.5	1.0	1.65
수지준설토사	1.0	1.0	1.0	1.0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유사한 종류로 분류한다.
2. 폐기물의 특성상 무게단위(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1.2의 계수로 나누어 환산·적용한다.

<표 3-32> 해양오염물질 부담금액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부과금액
기름	350원/리터(ℓ)

2. 종류별 부과계수

기름의 유형	해역계수			오염도계수(해양 환경복원계수) (D)	부과계수		
	환경보전해역 (A)	특별관리해역 (B)	그 밖의 해역 (C)		A×D	B×D	C×D
원유	1.2	1.4	1.0	1.4	1.68	1.96	1.4
중유	1.2	1.4	1.0	1.4	1.68	1.96	1.4
윤활유	1.2	1.4	1.0	1.0	1.2	1.4	1.0
경유	1.2	1.4	1.0	0.6	0.72	0.84	0.6
휘발유·등유· 탄화수소유	1.2	1.4	1.0	0.3	0.36	0.42	0.3

비고: 기름의 종류가 2가지 이상 혼합 배출되어 그 배출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계수가 큰 기름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발전소 및 임해공장 온배수

- 현재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수산자원의 부정적 이용행위 중에 가장 큰 것은 임해지역에 위치하는 발전소 및 공단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임
- 우리나라 대부분의 발전소는 냉각방식으로 해수 및 담수를 활용하고 이를 자연에 배출하고 있음
  - 대체에너지발전 및 수력발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발전방식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열을 발생시키고, 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바닷물을 취수하여 냉매로 사용하여 폐열을 처리한 후 자연으로

배출함

- 이처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해수를 온배수라고 함
-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7.66GW에 이르며, 연간 약 454T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매년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전설비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의 53.69GW에서 2009년의 77.66GW까지 10년 만에 45%가 증가함

<표 3-33> 우리나라 발전설비 증가 추이

단위 : MW

연도	수력	기력	복합화력	원자력	내연력	상용자가	집단	기타	계
2000	3,148	20,059	11,257	13,716	271	5,234			53,685
2001	3,876	21,559	11,436	13,716	273	5,857			56,717
2002	3,876	21,749	12,186	15,716	275	5,813			59,615
2003	3,877	21,749	13,086	15,716	246	4,667	1,296	83	60,720
2004	3,879	23,311	14,313	16,716	252	4,591	1,382	108	64,552
2005	3,883	23,811	15,015	17,716	297	4,817	1,382	156	67,077
2006	5,485	24,391	16,004	17,716	297	4,320	1,382	240	69,835
2007	5,492	26,491	16,511	17,716	303	4,855	893	862	73,123
2008	5,505	29,731	17,044	17,716	307	5,161	1,460	728	77,652
2009	5,514	29,571	17,575	17,716	347	4,192	1,579	1,168	77,662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epsis.kpx.or.kr/>)

- 상용자가발전을 제외하면 전체 발전설비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3.47GW이며, 연간 약 434T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 한전 및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가 차지하는 발전설비 규모는 87.1%로서 63.96GW임
- 2009년도 전기 생산은 407TWh로서 전체 전기 생산의 약 93.8%를 차지하고,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 연안에 2m<sup>3</sup>/초(6,300만 m<sup>3</sup>/년) 이상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업체임
- 발전소 이외 임해공단에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로는 포항제철(주), 포스코파워, GS EPS 부곡, 케이파워 및 메이아파워가 있음

<표 3-34> 발전단위별 온배수 배출현황

업체명	배출단위	배수량 (억톤/년)	설계 ΔT(°C)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	33.3	6.4
	영남화력	1.2	8.0-8.3
	신인천복합	10.7	7.0
	부산복합	6.1	8.2
	남제주화력	2.9	7.0
	소 계	54.2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	27.3	6.4-9.5
	영동화력	2.5	9.2
	여수화력	1.3	6.4-9.4
	영흥화력	38.2	6.4
	소 계	69.3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36.3	7.7
	평택화력	7.6	10.0
	서인천복합	4.9	6.4
	소 계	48.8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	28.6	6.4-6.8
	호남화력	6.4	8.8
	동해화력	4.0	7.2
	울산화력/복합	9.3	7.0-10.0
	소 계	48.3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복합	46.4	6.4-7.0
	서천화력	2.5	9.4
	인천화력/복합	5.6	7.0-10.2
	제주화력	2.1	7.0
	소 계	56.6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	41.8	4.7
	영광원자력	81.6	7.4
	월성원자력	47.0	8.2
	울진원자력	80.0	7.2
	소 계	250.4	
포항제철(주)*		17.0	7.0-8.0
GS EPS 부곡복합		1.8	7.0
포스코파워 복합발전소		1.9	10-13.5
케이파워 광양복합화력발전소		1.9	5-6
메이아파워 울촌복합화력발전소		2.4	
합 계		552.6	

- 2009년 현재 발전소 및 임해공단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약 552.6억톤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온배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서 연간 250.4억 톤의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음
  - 동 업체는 고리원전, 영광원전, 월성원전, 울진원전의 4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화력발전소 중에는 한국남동발전(주)가 연간 69.3억 톤의 가장 많은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동 업체는 삼천포화력, 영동화력, 여수화력, 영흥화력을 운영하고 있음

#### (6) 문제점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육상과 해양에서 각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대단히 포괄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하고 있음
- 수산자원의 이용은 직접적인 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이용의 범주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이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련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현재의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위해 인허가 수수료에 일부 부담하고 있고, 면제대상이 많아 금액면에서도 미미함
  - 수발기금이 원칙적으로 용자사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행 수산자원조성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적합하지 않음
- 그러나 발전소를 비롯한 임해공단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많은 악영향 미치고 있음
  - 온배수 배출은 배출지 인근의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들의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많은 규제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

## 2) 수산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당위성

- 발전소 및 임해공단의 온배수에 대한 책임 부과 당위성
  - 우리나라는 수산업의 근간인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증강시키기 위하여 많은 법적 규제와 더불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나 부담금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온배수 배출 업소에 대하여 온배수 배출을 규제하던가 아니면 그 행위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원관리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수산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및 수발기금 편입방안

-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수산자원이용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함
  - 의원입법으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를 제44조(수산자원이용부담금 조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제1항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자원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 징수대상에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발전소 및 임해공장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함
  - 한편 부담금의 사용처는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사용처를 확대함
- 수산업법 제77조(기금의 조성)에 수산자원이용부담금을 기금의 편입대상으로 법령 개정함
- 온배수 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 산정방법
- 기존의 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은 대부분 배출량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지여계수, 위반횟수 등) 등임
  - 온배수 배출은 불법적인 배출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부과금 징수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톤당 최소 1원, 5원 그리고 10원을 부과한 경우를 가정하였고, 온배수 배출량은 2009년을 기준으로 과거 추세를 감안하여 약 6%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함

<표 3-35> 수산자원이용부담금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억 톤,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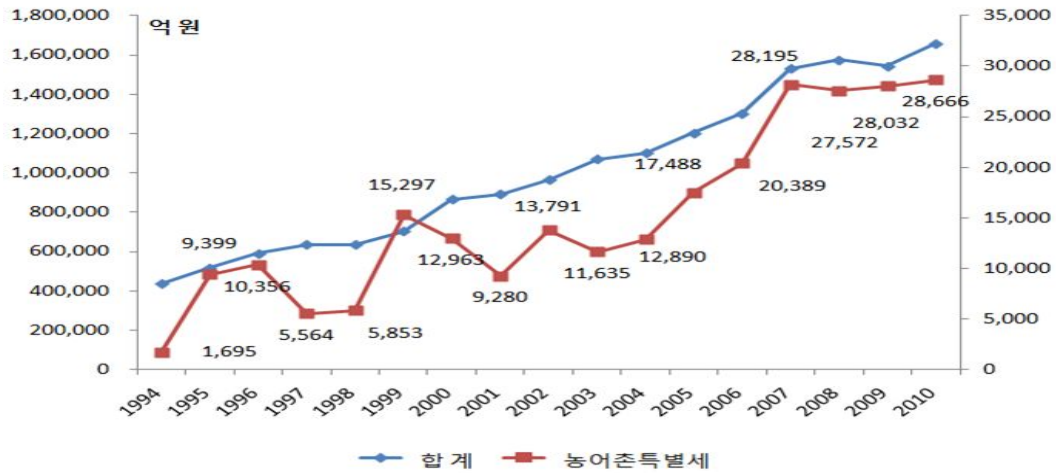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온배수 배출량	552	585	620	657	697	739	6% 증가
온배수 배출 부담금	55,200	58,512	62,023	65,744	69,689	73,870	1원
	276,000	292,560	310,114	328,720	348,444	369,350	5원
	552,000	585,120	620,227	657,441	696,887	738,701	10원



## 8. 농특세 확대

### 1) 농특세 현황

-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에 최초로 징수된 1,695억 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조 8,666억 원이 징수되었음



<그림 3-4> 농어촌특별세의 연도별 징수 추이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임
  - 이는 UR타결에 따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7.1~2014.6.30의 20년간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법률 제 6841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임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구 농어촌발전기금승계)
  - 회계의 운용관리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며, 설치년도는 1992년임
- 농특회계의 사업계정은 다음의 세 가지임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표 3-36> 농특회계의 사업 내용

계정별	세 입	세 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1.농지전용부담금 2.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예수금 4.용자금의 원리금 5.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 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 6.기타수입금	1.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용자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전출금 4.기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농어촌특별세액 2.용자금의 원리금 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4.그 밖의 수입금	1.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2.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사업 3.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4.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확충 사업 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전출금 6.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임업진흥 사업계정	1.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수입이 익금 2.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용자금의 원리금 4.기타수입금	1.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용자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전출금 3.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농특회계의 사업계정 중 농어촌특별세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임
- 농림수산물식품부의 2012년 세입예산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이며, 이 중 농어촌특별세는 38.1%를 차지하고 있음

<표 3-37>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금액	비중
합 계	95,122	145,250	100.0%
<input type="checkbox"/> 일반회계	203	186	0.1%
<input type="checkbox"/>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029	130,777	90.0%
[구조개선사업계정]	33,561	74,139	51.0%
[농특세사업계정]	47,469	56,638	39.0%
o 농어촌특별세	42,240	55,339	38.1%
<input type="checkbox"/> 양곡관리특별회계	13,890	14,287	9.8%

- 세출예산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59.6%이며, 이 중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24.8%를 차지함
  - 세입보다 세출이 낮은 것은 타 계정으로 예산이 전출되었기 때문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기금 전출금은 2012년에 대폭 줄어들어 2,487억 원, 1.2%임

<표 3-38>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비중
전 체	총 계	144,303	212,384	100.0
□ 일반회계	총 계	33,137	52,443	24.7
	일반지출	16,575	7,519	3.5
	회계계정간	13,737	42,474	20.0
	기금전출금	2,824	2,450	1.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 계	76,979	126,476	59.6
○ 구조개선사업계정	총 계	33,173	73,752	34.7
	일반지출	28,591	44,915	21.1
	회계계정간	-	13,628	6.4
	기금전출금	4,581	15,209	7.2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총 계	43,807	52,724	24.8
	일반지출	15,974	16,858	7.9
	회계계정간	19,108	33,379	15.7
	기금전출금	8,724	2,487	1.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총계(총지출)	1,422	1,323	0.6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계(총지출)	17,010	16,600	7.8
□ 양곡관리특별회계	총계(총지출)	13,890	14,287	6.7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총계(총지출)	1,866	1,255	0.6

- 다음은 각 기금의 수입 내역을 살펴본 것임

<표 3-39> 농안기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자체수입	22,129	22,826
◦ 부담금(수입권공매)	817	823
◦ 농산물판매수입	5,803	7,139
◦ 융자원금회수	14,728	13,997
◦ 이자수입 등	781	867
2. 정부내부수입(공자기금예수금)	22	32
3. 여유자금회수	3,708	3,299

<표 3-40> 축산발전기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자체수입	6,013	5,777
◦ 마사회 납입금	1,650	1,700
◦ 이자수입	197	191
◦ 융자원금회수	3,947	3,655
◦ 기 타	219	231
2. 여유자금회수	402	1,593

<표 3-41> 쌀보전 직불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자체수입	3	22
◦ 이자수입	3	22
◦ 수입쌀판매이익금	-	-
2. 정부내부수입	8,374	2,137
◦ 정부출연금	8,374	2,137
◦ 공자기금예수금	-	-
3. 여유자금회수	417	26

<표 3-42> FTA 이행지원기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자체수입	408	629
◦ 부담금	5	5
◦ 기타경상이전수입	73	73
◦ 융자원리금회수 등	330	551
2. 정부출연금	3,019	5,323
3. 여유자금회수	707	318

<표 3-43> 농지관리기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자체수입	8,909	10,940
◦ 농지보전부담금	4,466	6,689
◦ 융자원금회수	3,463	3,182
◦ 조성토지매각대	315	358
◦ 토지임대료	134	85
◦ 일시사용료	9	10
◦ 이자수입	522	616
2. 정부내부수입	100	112
◦ 정부출연금	100	-
◦ 공자기금예탁이자	-	112
3. 여유자금회수	1,958	5,593

<표 3-44> 수산발전기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자체수입	5,269	5,302
◦ 법정부담금	301	279
◦ 공유수면 점·사용료	82	142
◦ 융자원금 회수	4,586	4,472
◦ 수산물 판매수입	92	176
◦ 이자수입	208	233
2. 정부내부수입	660	660
3. 여유자금회수	497	828

<표 3-45> 농업재해보험기금 수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1. 재보험료수입	69	87
2. 정부출연금	350	350
3. 이자수입	87	98
4. 여유자금회수	1,055	2,094

- 각 기금의 수입내역 중 수발기금의 정부 내부회계(출연금 포함) 중에서 수발기금은 5.4%를 차지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금 전출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은 농지관리기금과 양곡증권정리 기금, 수발기금이 있음
- 기타 기금들은 농특회계에서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상 각 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기금 중 일반회계 지원은 농안기금뿐임

<표 3-46> 농림수산물부의 기금 비교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기금총액	정부출연금	비중
농안기금	25,859	26,157	32	0.1%
축발기금	6,415	7,370	0	-
쌀보전직불금	8,794	2,185	2,137	97.8%
FTA 이행지원기금	4,134	6,270	5,323	84.9%
농지관리기금	10,967	16,645	-	-
농업배해보험기금	1,561	2,629	350	13.3%
양곡증권정리기금	4,383	4,383	4,300	98.1%
소계(A)	62,113	65,639	12,142	18.5%
수발기금(B)	6,426	6,790	660	9.7%
B/A	10.3%	10.3%	5.4%	

<표 3-47> 농림수산물부의 기금 전출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 항목	2011년	2012년	내역
기금전출금 합계		1,613,012	2,014,593	
①농지관리기금지원	일반 회계	10,000	-	<input type="checkbox"/>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등 기금사업 안정 추진과 기금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운용 자금중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 기금운용규모 : 10,967억 원 → 16,645
②수산물발전기금 지원	일반 회계	15,000	15,000	<input type="checkbox"/> 한미 FTA 피해대책 소요 ◦ 기금운용규모 : 6,426억 원→6,790
③양곡증권정리 기금 지원	일반 회계	257,447	229,974	<input type="checkbox"/> 기금운용 규모 : 6,215억 원 → 4,383 ◦ 공자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 : 4,300억 원 ◦ 여유자금 운용 : 83억 원
④FTA이행지원기금 출연	농특 회계	301,881	532,338	<input type="checkbox"/> FTA 기금출연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 기금운용규모 : 4,134억 원 → 6,270
⑤쌀변동직불기금지원	농특 회계	837,449	213,683	<input type="checkbox"/> 기금운용 규모 : 8,795억 원 → 2,185 ◦ 변동직불금 : 620억 원
⑥농어업재해보험기금지원	농특 회계	35,000	35,000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화 및 거대재해시 국가재보험금의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 ◦ 기금운용규모 : 1,561억 원 → 2,629
⑦공자기금 총괄계정 원리금상환	농특 회계	84,394	988,598	<input type="checkbox"/> 공자기금 차입원리금 상환 ◦ 원금상환(-백만 원→ 926,336 ) ◦ 이자상환(84,394백만 원→62,262)
⑧공자기금 융자계정 원리금상환	농특 회계	71,841	-	<input type="checkbox"/> 공자기금 차입원리금 상환 완료

<표 3-48> 농어촌특별세 계정의 세입·세출 현황

단위 : 억 원

세 입			세 출		
구분	'11예산 (A)	'12예산 (B)	구분	'11예산 (A)	'12예산 (B)
계	87,267	136,813	계	87,267	136,813
[구조개선계정]	33,566	74,146	[구조개선계정]	33,566	74,146
○ 경상이전수입등	640	390	□ 일반지출	28,985	45,309
○ 경상이전수입등(진흥청)	6	7	○ 농림수산식품부	28,591	44,915
○ 융자원리금회수	6,142	4,665	○ 농진청	394	394
○ 전년도이월금	282	282	□ 내부거래지출	4,581	28,837
○ 정부내부수입	26,496	68,802	○ 농림수산식품부	4,581	28,837
- 일반회계전입금	7,388	35,424	- FTA기금	3,019	5,323
- 농특세계정전입금	19,108	33,378	- 공자기금원리금	1,562	9,886
			- 광특회계전출금	-	13,628
[농어촌특별세계정]	47,469	56,638	[농어촌특별세계정]	47,469	56,638
○ 농특세	42,240	55,339	□ 일반지출	19,636	20,773
○ 경상이전수입등	198	265	○ 농림수산식품부	15,974	16,858
○ 융자원금회수	386	188	○ 소방방재청	2,072	2,269
○ 정부내부수입	446	501	○ 환경부	909	1,035
- 국민주택원리금회수	446	501	○ 보건복지부	672	602
○ 전년도이월금	4,199	345	○ 노동부	9	9
			□ 내부거래지출	27,832	5,865
			○ 농림수산식품부	27,832	35,865
			- 쌀변동기금	8,374	2,137
			- 농어업재해기금	350	350
			- 계정간전출금	19,108	33,378
[임업진흥계정]	6,232	6,029	[임업진흥계정]	6,232	6,029
○ 자체수입	2,098	2,378	□ 일반지출	5,799	5,669
○ 일반회계전입금	4,134	3,363	□ 내부거래지출	433	360
○ 전년도이월금	-	288			

<표 3-49>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계	농업	수산	식품
농특	10,275,710	9,379,065	796,288	100,357
점유율	100.0%	91.3%	7.7%	1.0%
일반/광특	5,985,742	5,460,563	525,179	0
농특점유율	58.3%	58.2%	66.0%	100.0%

<표 3-50> 수산분야 농특회계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 수산·어촌	762,655	796,288
농특계정 합계	496,460	525,179
<b>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b>	<b>30,300</b>	<b>39,596</b>
◦수산물 종합가공단지 정화시설 지원(농특)	270	-
◦수산시장시설개선	3,750	3,209
◦수출가공선진화단지조성(농특)	18,440	24,000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농특, 신규)	-	108
◦수산물 이력제 (농특)	1,700	1,530
◦수산물 위생관리	2,200	1,900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농특)	2,567	2,100
◦노량진수산시장 건립(농특)	500	5,219
◦수산동물질병관리 및 적조피해예방 지원(농특)	873	1,530
<b>②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b>	<b>137,640</b>	<b>140,433</b>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농특)	2,252	2,25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1,300	2,70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농특)	5,040	8,040
◦친환경양식어업 육성(농특)	8,820	15,100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농특)	5,035	5,003
◦내수면 자원조성(농특)	4,300	2,760
◦자율관리어업육성	12,844	13,070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3,240	3,039
◦연근해어선 감척	41,214	29,795
◦적조피해예방 지원(농특)	300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농특)	53,295	58,674
<b>③ 어촌·어항개발</b>	<b>147,887</b>	<b>157,306</b>
◦어촌관광활성화	3,464	3,520
◦국가어항건설	139,262	134,458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농특, 신규)	-	10,473
◦국가어항관리	5,161	8,855
<b>④ 수산경영지원</b>	<b>169,788</b>	<b>175,650</b>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농특)	82,431	77,841
◦어선원 및 어선보험 (농특)	67,714	72,700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농특)	7,038	9,649
◦수산장비활용	1,737	1,737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농특, 신규)	-	1,812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농특)	10,868	11,911
<b>⑤ 원양협력</b>	<b>10,845</b>	<b>12,194</b>
◦수산물 해외시장개척(농특)	4,010	4,373
◦원양어업활성화	3,736	4,257
◦연안국과의 협력	2,099	1,964
◦연안국과의 협력(ODA, 농특)	1,000	1,600



<표 3-51> 수산분야 일반 및 광특회계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 수산·어촌	762,655	796,288
광특 및 일반계정 합계	266,195	271,109
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0	7,200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광특)	0	7,200
②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86,944	88,342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운영 (일반)	1,735	-
◦해조류바이오매스에너지화기술개발 (일반)	1,000	1,000
◦어업협정 이행	1,893	2,035
◦어선 안전점검 요원 운영	647	450
◦수산어업행정지원(광특 직접편성)	21,886	22,866
◦어업정보통신 지원	12,811	13,241
◦어업지도단속	24,472	24,250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광특 직접편성)	2,000	2,000
◦골패각자원화처리시설 지원(광특)	0	2,000
◦유류피해지역지원	20,500	20,500
④ 수산경영지원	47,790	50,044
◦수협경영 정상화 지원(일반)	33,430	33,294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광특)	14,360	16,750
⑥ 수산연구(수산과학원)(일반)	99,736	92,643
⑦ 어업지도관리	20,912	23,337
◦어업지도선 장비확충 및 시설운영	6,800	8,300
◦어업지도선유류비(일반)	13,626	14,545
◦어업지도 정보화(일반)	486	492
⑧ 수산물품질관리	10,813	9,543
◦수산물검역검사	8,526	8,329
◦수산물원산지관리	1,127	1,214
◦수산물품질검사 정보화	1,160	-

- 농어촌특별세에서 구조개선 계정과 농어촌특별세 계정의 수산분야 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서 농업의 91.3%에 비해 아주 적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특별세계정의 내부거래에서도 기금 관련은 쌀변동 기금과 농어업재해기금만이 있고, 수산관련은 없음

- 이처럼 농어촌특별세 수입 중 수산분야의 비중이 낮고, 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지만, 신규재원 편입 가능한 것은 경정경주에 부과되는 농특세가 유일하므로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3-52> 경정경주 관련제세

단위 : 백만 원

구분	합계	경주관련제세				기타 소득세	입장료제세		
		소계	레저세	지방 교육세	농특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계	858,659	844,629	492,614	253,491	98,524	13,284	494	148	104
2011	120,175	117,562	73,477	29,390	14,695	2,141	325	98	49
2010	105,632	104,126	65,079	26,031	13,016	1,433	51	15	7
2009	116,628	114,933	71,833	28,733	14,367	1,608	60	18	9
2008	125,615	123,641	68,689	41,214	13,738	1,890	58	17	9
2007	98,697	96,976	53,876	32,325	10,775	1,721	-	-	-
2006	72,553	71,495	39,719	23,832	7,944	1,055	-	-	3
2005	75,502	74,291	41,272	24,764	8,255	1,206	-	-	5
2004	61,715	60,799	33,777	20,266	6,756	910	-	-	6
2003	59,733	58,787	32,659	19,596	6,532	938	-	-	8
2002	22,409	22,019	12,233	7,340	2,446	382	-	-	8

## 2) 레저세(경정경주) 농특세의 수발기금 편입 필요성

- 레저세(leisure tax)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임
- 경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에서 수익금의 용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임
  - 또한,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도 포함됨

- 하지만 경정은 타 레저 세원과는 달리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수산에 대한 수익금의 배분이 필요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산업에만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경정에서 수산분야로 편입이 가능한 세원은 농어촌특별세가 유일한데 이를 수산분야에 한정지어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을 추진함
- 신규기금 도입에 따른 사업은 경정이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재원과 사업간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기사업 편입을 추진함
  - 기사업 편입 방향(안)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양식어업지원(내수면 양식시설)

### 3) 레저세(경정경주) 농특세의 수발전기금 편입 방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항 중 ② 세출,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의 일부 수정
  - “다. 어항건설”을 “다. 어항건설과 수산발전기금사업(경정으로 인한 수산 피해보전)”으로 수정

<표 3-53> 경정경주 농특세의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도입 추정액

단위 : 억 톤, 백만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경정농특세	14,695	15,430	16,201	17,011	17,862	18,755	5% 증가
10%	1,470	1,543	1,620	1,701	1,786	1,875	
20%	2,939	3,086	3,240	3,402	3,572	3,751	
30%	4,409	4,629	4,860	5,103	5,359	5,626	

## 9. FTA 수산물공매납입금

### 1) 관세율할당제도

-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란 이중 관세체도로써, 특정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
- FTA에서의 TRQ 운영은 특별한 운영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FTA 당사국간 협의하여 결정함
- TRQ 관리방식은 다음과 같음
  - 실행관세에 의한 TRQ 관리 : 수입량이 설정된 TRQ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져도 상대적으로 낮은 쿼터내 관세만을 적용
  - 선착순 배정방식 : 수입통관시의 순서에 따라 TRQ 물량까지는 낮은 쿼터내 관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쿼터밖 관세를 적용
  - 수입허가제도에 의한 TRQ 관리 : 정부가 TRQ 물량의 수입권한을 민간에 배분하는 제도
  -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 : TRQ 물량의 수입을 과거 교역실적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 또는 수출국에 할당하는 배분방식
  - 수입권 공매방식 :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TRQ 내 수입권을 배분하는 방식
  - 국영무역방식 :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이 TRQ 물량을 수입해서 관리하는 방식
  -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운영 : TRQ 물량의 수입권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 가공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부여되는 방식

## 2) FTA별 수산물관세율할당 현황

### (1) FTA별 수산물관세율할당 및 수산물공매납입금 현황

-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아세안(ASEAN), 한-EU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일부 수산품목에 대한 관세율할당(TRQ)제도를 도입함
-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FTA에 따른 냉동 고등어 협정관세적용물량은 500톤이며,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지정기관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추천대행기관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임

<표 3-54>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율할당물량

품목구분	HS번호	관세율할당 추천품명	관세율할당 배정방식	추천대행 기관	관세율할당 적용수량	원산지
고등어	0303-74-0000	냉동고등어	지정기관 배정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500톤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 공화국)

- 한·아세안 FTA 협정 「부록 2 초민간품목 목록 그룹 D: 관세율 할당 대상인 관세품목」에 수산물의 경우 HS 6단위 기준 냉동새우와 보리새우(030613), 활신선·냉장 새우와 보리새우(030623), 기타(갑오징어)(030749), 가공새우와 보리새우(160520) 등 4개 품목이 명시되어 있음
  - 한·아세안 FTA에서 품목별 TRQ 물량은 새우살과 냉동새우·보리새우 5,000톤, 가공새우 2,000톤, 갑오징어 2,000톤, 산것·신선·냉장 새우·보리새우 300톤 등 총 9,300톤임
- 한·아세안 FTA 수산물 TRQ 물량 배분에 수입권 공매제도를 도입함
  - 이는 시장접근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차익금의 일부를 수발

기금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고액납입 희망자 순으로 수입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 수입차익금은 국내 가격에서 판매 원가를 공제한 판매이익금 가운데 일부로서, 수입차익금 전액은 수발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3-55>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관세율할당적용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톤)	협정관세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협정관세적용추천대행기관
새우와보리새우(새우살, 냉동)	0306-13-1000	5,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새우와보리새우(기타, 냉동)	0306-13-9000				
새우,보리새우(산것,신선또는냉장한것)	0306-23-1000	3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갑오징어(냉동)	0307-49-1010	2,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새우와보리새우(기타,조제또는저장처리한것으로 훈제, 브레드한 것 제외)	1605-20-9090	2,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한-미 FTA 협정의 경우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넙치류, 명태, 민어 3개 품목에 대해 별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에 의거, 통관 선착순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고 있음
- 즉, 추천대행기관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이 필요없이 수입통관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무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됨

<표 3-56>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2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대행 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넙치류	0303-39-0000	0303-34-0000 0303-39-0000	터벗(프세타 멕시마) 넙치기타	1,530톤	-	통관선착순
명태	0303-79-1000	0303-67-0000 0303-69-9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기타	4,000톤	-	통관선착순
민어	0303-79-9095	0303-89-9091	민어	1,000톤	-	통관선착순

- 한-EU FTA의 경우 수입권 배분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이 배정됨
  - 수산물의 경우 넙치에 대해 별표 1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에 의해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됨
  - "선착순 방식"이란 추천대행기관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이 필요없이 수입통관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무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됨

<표 3-57>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할당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넙치	0303-34-0000 0303-39-0000	터벗(프세타 멕시마) 기타	800톤	-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공매납입금으로 수발기금에 귀속되는 FTA는 한-아세안 FTA 한 건 뿐이고, 한-EFTA는 대형선망수협에서 수익금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한미 FTA와 한EU FTA는 통관선착순으로

물량이 할당되기 때문에 공매납입금이 없음

- 따라서 한·아세안 FTA의 수산물 공매납입금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2) 관련 법률

-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FTA 체결에 따라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수산물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수산업 경쟁력강화 및 피해업계,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부과대상
  - 관세율할당품목에 대한 수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입권을 경쟁입찰 실시 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하여 낙찰된 수입자
  - 납부의무자 : 수입권을 부여 받은 자
  -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5호) 제3조
- 부담요율
  -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여 수입자료 결정된 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액
  - 부담률(%) : 경쟁입찰시 제시한 금액
  - 산출식 : 낙찰물량(ton)×수입자가 입찰시 제시한 단위톤당 금액(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5호) 제4조

## (3) 재원의 활용 실태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41억 원에 그쳤던 수산물공매납입금은 연평균 34%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25억 원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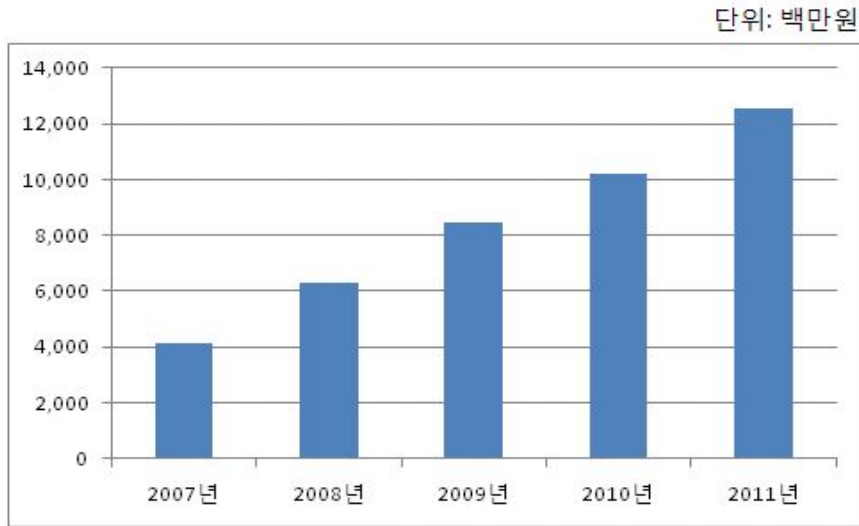


<표 3-58> 수산물공매납입금 징수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구 분	전체물량	낙찰물량		통관물량		공매납입금 징수실적
		물량	비율(%)	물량	비율(%)	
2007년	9,300	5,692	61.2	5,207	56.0	4,123
2008년	9,300	7,301	78.5	7,190	77.3	6,271
2009년	9,300	9,054	97.4	8,458	90.9	8,478
2010년	9,300	9,256	99.5	7,842	84.3	10,230
2011년	9,300	7,289	78.5	7,151	76.9	12,5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3-5> 공매납입금 징수실적

- 부담금은 수산업법 제76조, 제77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편입되어 FTA 등의 시장개방에 따른 어업인의 어업경영기금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산업 경쟁력 육성에 활용되고 있음
- 이 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DDA, FTA 등의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TRQ)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한하여 공매납입금을 부과하는 부담금에 해당되며, 한-아세안 FTA 관세율할당(TRQ) 수입수산물 수입자의 이득의 일부 환수를 통한 피해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것임

### 3) 수산물발전기금 확대 방안

-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우 협정문에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선착순 배분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수입권 공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FTA 수산물 공매납입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을 비롯해 7개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 관세할당 수산물 품목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즉, 수입권 배분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TRQ내 수입권을 배분하는 공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함
- 더불어 FTA 수입이익금을 수발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수산물발전기금의 신규재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중국 등 수산강국과의 FTA 체결시 관세율할당물량을 설정하는 것은 저율의 관세에서 할당량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59> 우리나라의 협상중인 FTA 대상국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캐나다	- 05년 7월 협상 개시 - 08년 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시장
GCC (6개국)	- 07년 11월 사전협의 개최 - 총 3차례 공식협상 개최(08년 7월, 09월3월, 7월)	자원부국,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멕시코	- 07년 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 08년 6월 제2차 협상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호주	- 07년 5월~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자원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 07년 2월~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콜롬비아	- 09년 3월 ~9월 민간공동연구 - 총6차례 공식협상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인도네시아	- 11년 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12년 3월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ASEAN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2011년 기준)
중국	- 07년 3월~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 10월 9월~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실무협의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참조

<표 3-60> 수산물공매납입금의 수산발전기금 재원 추정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수산물 공매납입금	8,400	11,000	11,000	11,000	11,000	

주 : 2102년 수산발전기금 중기계획을 반영한 금액임



## IV.

#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 1. 재원조성의 비전 및 목표

### 1) 재원조성의 필요성

#### (1) 수발기금 사업체제 개편방향

- 2001년 설립당시 262억 원으로 출발한 수발기금은 10년이 지난 2011년 누적으로 8,725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8%의 증가세를 보였고, 수발기금의 수산사업 비중은 40%대로 중요한 재원임
  - 그러나 2010년 기금준치평가에서 사업의 중복성·유사성·광범위성, 사업추진의 적절성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사업체제 개편이 요구되었음
- 따라서 현재 수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하에서 사업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음
  - 기금의 특성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기금의 장점인 사업의 지속성 및 신속성 유지
  - 기금준치평가에 부합하는 사업체제 개편
  - 수산보조금의 국제적 금지논의에 부합하는 사업체제 개편
  -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소모성 사업의 조정
-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방향
  - 현행 사업체제 개선 : 재원 조성이 적정성 강화, 기금사업의 운용 효율성 증대 및 사업성과 평가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함
  -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안 : 예산사업으로 전환, 사업내용의 조정 및 사업금리 조정방안, 수산보조금 논의동향에 따른 사업 개편 방안
  - 신규사업 발굴 : 기금설치법에 부합한 사업, 기금재원과 연계한 사업, 미래 수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등의 발굴

## (2) 재원조성의 필요성

### ○ 특화된 수발기금의 정체성 확립 필요

- 기금준치평가에서 수발기금은 재원과 관련해 목적사업을 특화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수발기금의 특화를 위해 운용사업의 조정과 더불어 추진사업의 통폐합 및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 발굴

- 기금준치평가에서 수발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재원 확충이 지적됨
- 해양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재원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유통사업 확대에 따른 용자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증대로 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발기금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확실성이 있는 재원의 확보가 요구됨

### ○ 기금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재원 확보

- 수산물 관세수입금
  - FTA 체결 가속화로 인한 시장 개방 및 주요 수산자원 보유국의 자원 자국화 강화에 대응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후생 증대 및 가격 조정을 통한 생산자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
- 수산자원이용자에 대한 부담금 신설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비하고 유어 및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 징수 필요
-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재원 확보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 최소화 및 구조조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필요

### ○ 신규사업 발굴에 대응한 새로운 재원 확보

- 2011년 선행 연구에서는 수발기금에 부합하고 미래의 국내외 수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함

<표 4-1> 수산발전기금 장단기 사업개편(안)

기금용도	사업명	지원형태	계속성	추진기간
어업구조조정 촉진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융자	계속	단기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융자	계속	단기
	노후원양어선 대체지원	융자	계속	단기
	어선리스사업	융자	신규	중장기
	수산장비 임대사업	융자	신규	중장기
기르는 어업 육성	양식어업 지원	융자	계속	단기
	인공어초 개발 및 제작	융자	신규	중장기
	신품종 개발 및 중요생산	융자	신규	중장기
어업경영기금의 융자	어업인 영어자금 공급	융자	계속	단기
수산물유통 구조개선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	융자	계속	단기
	산지위판장 현대화	융자	신규	단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경상/융자	신규	중장기
	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융자	신규	중장기
수산물 생산 및 출하조정	수산물자조금	경상	계속	단기
	수산물 물가안정사업	융자	신규	단기
해양환경 개선	연근해어장 환경개선	경상	계속	단기
새로운 어장개발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계속	단기
	해외 신어장 개발사업	융자	신규	중장기
	해외 양식어장 개발사업	융자	신규	중장기
	글로벌수산업 육성	융자	신규	중장기
수산물 가공업 육성	가공시설 및 운영	융자	계속	단기
	전통 수산물가공업	융자	신규	중장기
	세계 수산식품 개발	융자	신규	중장기
FTA 발효 어업인 지원	원양어업관리회사	융자	계속	단기
	폐업지원금	경상	계속	단기
	소득보전직불금	경상	계속	단기
	FPC 건립사업	경상	신규	단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경상	계속	단기
	해양폐기물정화(민간보조)	경상	계속	단기
	해양폐기물정화(지자체 보조)	경상	계속	단기
수산물 보관관리	수산물 물류사업	융자	신규	중장기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경상	신규	중장기
합 계	총 32개(경상 9, 경상/융자 1, 융자 22) (단기 19, 중장기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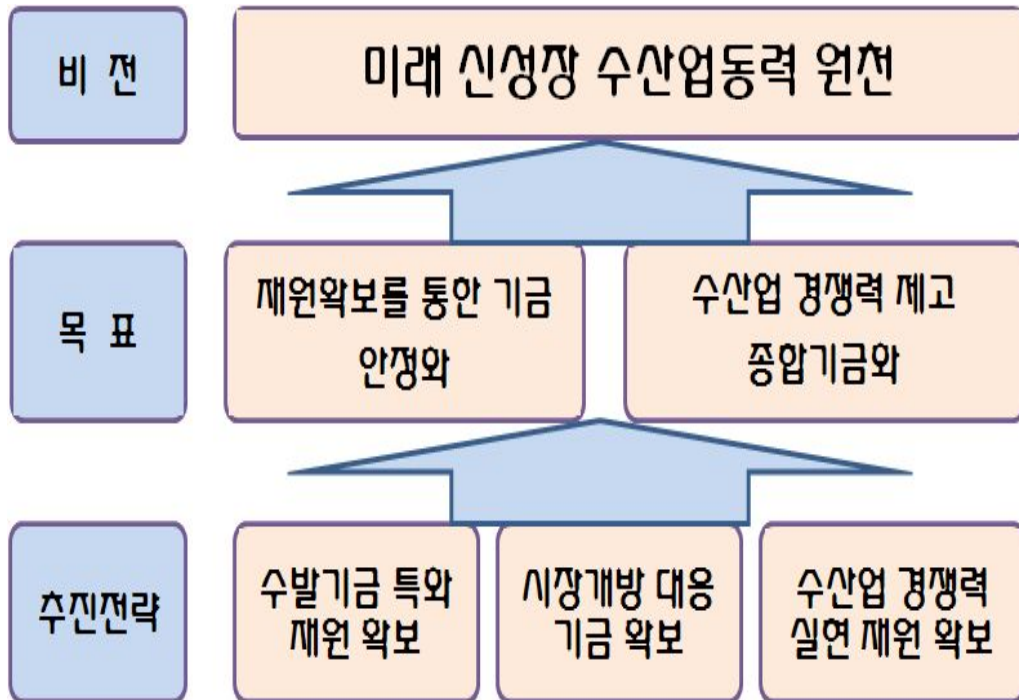
자료 : 류정곤 외, 「수산발전기금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3., p104

- 2011년 현재 19개(경상 8개, 용자 11개)사업에서 총 32개(경상 9, 경상/용자 1, 용자 22개) 사업을 제안하여 순수하게 13개 사업이 증가함
-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사업이 수발기금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의 기금의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2)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조성 비전 및 목표

-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비전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이 라는 관점과 기금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 신성장 수산업동력 원천”으로 설정함
  - 향후 수산발전기금이 기금으로서 존치하고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재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님
  - 미래 수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보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논리가 필요함
  - 즉 미래의 수산업은 생명경제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발전기금 또는 동 기금 재원 확보의 비전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설정함





<그림 4-1> 수산발전기금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한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첫째는 “재원 확보를 통한 기금 안정화”이고, 둘째는 “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기금화”임
  - 기금재원 확보의 첫째 목표는 기금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안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함
  - 둘째는 수산발전기금의 목적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기금화를 둘째 목표로 설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기금재원 확보의 전략으로는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크게 기금의 특화, 새로운 대외 수산경제 대응 및 수산업의 경쟁력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는 수산발전기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수발기금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임
  - 둘째는 WTO/DDA, FTA 등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임

- 셋째는 수발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수산업 경쟁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임

○ 이상의 비전, 목표 및 실천전략은 크게는 수산발전기금사업 전체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협의로는 수발기금 신규재원 확보에 한정될 수도 있음

-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발기금의 존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 얼마나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보고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 할 것임
- 단순한 덩치 키우기식 재원 확보가 아니라 수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여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에 걸맞는 재원을 발굴하여 기금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신규재원을 발굴하고 기금의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기존재원의 추세 분석 및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기금규모를 추정하였음

## 2. 수발기금 재원조성 추진방안

### 1) 개요

- 2012년 현재 수발기금의 재원은 공자기금예수금과 자체수입원인 재원이 10개이며, 이 중 순수하게 법에 의하여 기금재원으로 된 것은 8개임
- 한편 신규로 본 연구에서 발굴한 재원은 8개인데, 이 중 감척어선 매각대금은 기존에는 2008년 이후에 종결되었고, 새로이 연근해어업구조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편입된 재원이기 때문에 신규재원으로 선정함
- 기존재원의 경우는 2012년 수산발전기금 중기계획에 의한 조성예상액을 준용하였고, 신규재원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8개 재원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2016년까지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규모를 추정하였음
- 기존재원은 2012년 151,353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61,160백만 원으로 약간 증가하는 중기계획에 따랐음
  - 법정부담금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공유수면점사용료는 2014년 이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고, 수산물 판매수입 및 수산물 공매납입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반면 신규재원은 발굴한 재원이 모두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결과 2012년 1,200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92,368백만 원으로 증가함
  - 2016년 기존 및 신규재원을 합한 조성자금은 353,528백만 원이고 이 중 신규재원이 약 54%를 점할 것으로 추정됨
- 기초자산(순자산 + 부채)과 기존 및 신규 조성자금을 합한 자금에서 지출을 뺀 기말자산의 합계는 2012년 955,771백만 원에서 2016년에는 1,734,228백만 원으로 늘어남
  - 동기간 재원 순증액은 861,728백만 원으로 추정되나, 신규재원의 도입시기에 따라서 조성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

<표 4-2> 수산발전기금 신규 및 기존재원 확보 방안(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성 누계	
기초자산		872,500	955,771	1,125,300	1,293,676	1,494,698		
순자산		821,500	853,771	972,300	1,089,676	1,239,698		
부채		51,000	102,000	153,000	204,000	255,000		
자 체 조 성	합 계(A+B)	152,553	260,664	277,652	312,708	353,528	1,357,105	
	소 계(A)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733,972	
	기 존	정부출연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공자기금예수금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법정부담금	27,941	23,009	22,282	22,282	22,282	117,796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2,531	2,809	2,082	2,082	2,082	21,58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0	200	200	200	200	810
		- 수산물 구매납입금	8,400	11,000	11,000	11,000	11,000	52,400
		공유수면 점사용료	14,221	5,904	-	-	-	20,125
		수산물 판매수입	17,594	15,213	20,822	28,498	39,003	121,130
		기타이자수입	25,597	26,518	28,828	30,103	33,875	144,921
	소 계(B)	1,200	124,020	139,720	165,825	192,368	623,133	
	신 규	1. 수산물수입관세	-	4,645	4,645	4,645	4,645	18,580
		2. IUU 위반 구매처분금	-	2,000	2,000	2,000	2,000	8,000
		3. 불법어업 담보금	-	17,443	19,188	21,106	23,217	80,954
		4. 유어낙시자원부담금	-	5,089	5,242	5,399	5,561	21,291
		5. FTA기금 전입금	-	30,000	40,000	60,000	80,000	210,000
		6. 감척어선 매각대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7.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62,023	65,744	69,689	73,870	271,326	
8. 농특세 확대		-	1,620	1,701	1,786	1,875	6,982	
지 출	합 계	69,282	91,135	109,276	111,686	113,998	495,377	
	경상사업	64,236	84,016	99,930	100,090	100,160	448,432	
	기금운영비	1,458	1,687	1,742	1,819	1,889	8,595	
	공자기금차입금이자	3,588	5,432	7,604	9,777	11,949	38,350	
기말자산 합계		955,771	1,125,300	1,293,676	1,494,698	1,734,228	861,728	
순자산		853,771	972,300	1,089,676	1,239,698	1,428,228	606,728	
부 채		102,000	153,000	204,000	255,000	306,000	255,000	

주 : 기존재원은 2012 수산발전기금 중기계획에 근거함

- 신규재원은 전술한 3대 추진전략에 연계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수발기금 특화 재원 확보전략에는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및 농특세 확대 등으로 수발기금의 특성에 맞는 재원들임
  - FTA 등 시장개방 대응 기금 확보전략에는 수산물 수입관세와 FTA기금 전입금이 이 전략의 재원이 될 수 있음
  - 수산업 경쟁력 실현 재원 확보전략에는 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이라든가 구조개선 등의 수입금으로서 IUU 위반 공매처분금, 불법어업 담보금 그리고 감척어선 매각대금이 포함됨

<표 4-3>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3대 추진전략별 재원

구 분	신규재원명	비고
수발기금 특화 재원 확보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농특세 확대	3
시장개방 대응 기금 확보	○ 수산물 수입관세 ○ FTA기금 전입금	2
수산업 경쟁력 실현 재원 확보	○ IUU 위반 공매처분금 ○ 불법어업 담보금 ○ 감척어선 매각대금	3

## 2) 추진방향

- 앞서 제시한 신규재원은 당장 수발기금으로 편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원별 기금편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별 기금화 전략을 수립함
-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하고 단기(2013년), 중기(2014년), 장기(2016년)의 단계별로 기금화하는 전략을 수립함
- 또한 기금별 시나리오에 의한 기금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1안은 가장

낙관적인 안이고, 2안은 보통, 그리고 3안은 비관적인 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을 수립함

- 감척어선 매각대금과 불법어업 담보금은 2012년부터 가능하고, IUU 위반 공매처분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아 단기로 설정함
- 낙관론인 1안은 단기 3개, 중기 4개, 장기 1개로 분류하였고, 중도론은 FTA기금 전입금을 장기전략으로 전환한 것임
- 비관론인 3안은 단기 3개, 중기 2개, 장기 3개로서 유어낚시자원부담금이 장기로 분류된 것임
- 이상과 같이 수산분야 내부에서 조달이 가능한 재원은 비교적 단기 및 중기로 분류하였고, 수산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는 재원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였음
- 특히 수산물 수입관세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과제로 분류하여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함

<표 4-4> 시나리오별 단계별 신규재원 확보 전략

구 분	1안(낙관)	2안(중도)	3안(비관)
○ 수산물 수입관세	중기	중기	중기
○ IUU 위반 공매처분금	단기	단기	단기
○ 불법어업 담보금	단기	단기	단기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중기	중기	장기
○ FTA기금 전입금	중기	장기	장기
○ 감척어선 매각대금	단기	단기	단기
○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장기	장기	장기
○ 농특세 확대	중기	중기	중기
○ 합 계	단기 : 3 중기 : 4 장기 : 1	단기 : 3 중기 : 3 장기 : 2	단기 : 3 중기 : 2 장기 : 3

주 : 단기-2013년, 중기-2014년, 장기-2016년

### 3) 시나리오별 신규재원 규모 추정

- 각 시나리오별로 기초자산과 기존재원은 그대로 준용하고, 신규재원은 <표 4-4>에 근거하여 도입시기를 조정하여 추정함
  - 정상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경우 2014년에는 1,021,923백만 원으로 1조원이 넘어설 예정임
  - 시나리오별로 볼 때 2016년에 낙관론은 1,495,417백만 원, 보통은 1,395,417백만 원, 비관론적인 입장에서도 2016년에는 1,384,776백만 원에 이름
- 더 나아가서 모든 신규재원을 단기에 달성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조 7천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재원 중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다른 분야에서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가 있어 모든 재원을 단기에 달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표 4-5> 시나리오별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낙관론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124,554	1,255,887
	기 존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신 규	1,200	20,643	73,975	96,136	192,368
	기말합계	955,771	1,021,923	1,124,554	1,255,887	1,495,417
보 통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084,554	1,155,887
	기 존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신 규	1,200	20,643	33,975	36,136	192,368
	기말합계	955,771	1,021,923	1,084,554	1,155,887	1,395,417
비관론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079,312	1,145,246
	기 존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신 규	1,200	20,643	28,733	30,737	192,368
	기말합계	955,771	1,021,923	1,079,312	1,145,246	1,384,776

주 : 기말합계는 지출을 공제함 금액임

- 이하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재원별 연도별로 기금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4-6>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낙관론)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성 누계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124,554	1,255,887		
순자산		821,500	853,771	868,923	920,554	1,000,887		
부채		51,000	102,000	153,000	204,000	255,000		
자 체 조 성	합 계(A+B)	152,553	157,287	211,907	243,019	353,528	1,118,294	
	소 계(A)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733,972	
	기 존	정부출연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공자기금예수금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법정부담금	27,941	23,009	22,282	22,282	22,282	117,796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2,531	2,809	2,082	2,082	2,082	21,58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0	200	200	200	200	810
		- 수산물 공매납입금	8,400	11,000	11,000	11,000	11,000	52,400
		공유수면 점사용료	14,221	5,904	-	-	-	20,125
		수산물 판매수입	17,594	15,213	20,822	28,498	39,003	121,130
		기타이자수입	25,597	26,518	28,828	30,103	33,875	144,921
	소 계(B)	1,200	20,643	73,975	96,136	192,368	384,322	
	신 규	1. 수산물수입관세	-	-	4,645	4,645	4,645	13,935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	2,000	2,000	2,000	2,000	8,000
		3. 불법어업 담보금	-	17,443	19,187	21,106	23,217	80,953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	5,242	5,399	5,561	16,202
		5. FTA기금 전입금	-	-	40,000	60,000	80,000	180,000
		6. 감척어선 매각대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7.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	-	-	73,870	73,870
8. 농특세 확대		-	-	1,701	1,786	1,875	5,362	
지 출	합 계	69,282	91,135	109,276	111,686	113,998	495,377	
	경상사업	64,236	84,016	99,930	100,090	100,160	448,432	
	기금운영비	1,458	1,687	1,742	1,819	1,889	8,595	
	공자기금차입금이자	3,588	5,432	7,604	9,777	11,949	38,350	
기말자산 합계		955,771	1,021,923	1,124,554	1,255,887	1,495,417	622,917	
순자산		853,771	868,923	920,554	1,000,887	1,189,417	367,917	
부 채		102,000	153,000	204,000	255,000	306,000	255,000	



<표 4-7> 수산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보통)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성 누계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084,554	1,155,887		
순자산		821,500	853,771	868,923	880,554	900,887		
부채		51,000	102,000	153,000	204,000	255,000		
자 체 조 성	합 계(A+B)	152,553	157,287	171,907	183,019	353,528	1,018,294	
	소 계(A)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733,972	
	기 존	정부출연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공자기금예수금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법정부담금	27,941	23,009	22,282	22,282	22,282	117,796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2,531	2,809	2,082	2,082	2,082	21,58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0	200	200	200	200	810
		- 수산물 공매납입금	8,400	11,000	11,000	11,000	11,000	52,400
		공유수면 점사용료	14,221	5,904	-	-	-	20,125
		수산물 판매수입	17,594	15,213	20,822	28,498	39,003	121,130
		기타이자수입	25,597	26,518	28,828	30,103	33,875	144,921
	소 계(B)	1,200	20,643	33,975	36,136	192,368	284,322	
	신 규	1. 수산물수입관세	-	-	4,645	4,645	4,645	13,935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	2,000	2,000	2,000	2,000	8,000
		3. 불법어업 담보금	-	17,443	19,187	21,106	23,217	80,953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	5,242	5,399	5,561	16,202
		5. FTA기금 전입금	-	-	-	-	80,000	80,000
		6. 감척어선 매각대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7.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	-	-	73,870	73,870
8. 농특세 확대		-	-	1,701	1,786	1,875	5,362	
지 출	합 계	69,282	91,135	109,276	111,686	113,998	495,377	
	경상사업	64,236	84,016	99,930	100,090	100,160	448,432	
	기금운영비	1,458	1,687	1,742	1,819	1,889	8,595	
	공자기금차입금이자	3,588	5,432	7,604	9,777	11,949	38,350	
기말자산 합계		955,771	1,021,923	1,084,554	1,155,887	1,395,417	522,917	
순자산		853,771	868,923	880,554	900,887	1,089,417	267,917	
부 채		102,000	153,000	204,000	255,000	306,000	255,000	

<표 4-8> 수산물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규모(비관론)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성 누계	
기초자산		872,500	955,771	1,021,923	1,079,312	1,145,246		
순자산		821,500	853,771	868,923	875,312	890,246		
부채		51,000	102,000	153,000	204,000	255,000		
자 체 조 성	합 계(A+B)	152,553	157,287	166,665	177,620	353,528	1,007,653	
	소 계(A)	151,353	136,644	137,932	146,883	161,160	733,972	
	기 존	정부출연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공자기금예수금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법정부담금	27,941	23,009	22,282	22,282	22,282	117,796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12,531	2,809	2,082	2,082	2,082	21,586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000	9,000	9,000	9,000	9,000	43,000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0	200	200	200	200	810
		- 수산물 공매납입금	8,400	11,000	11,000	11,000	11,000	52,400
		공유수면 점사용료	14,221	5,904	-	-	-	20,125
		수산물 판매수입	17,594	15,213	20,822	28,498	39,003	121,130
		기타이자수입	25,597	26,518	28,828	30,103	33,875	144,921
	소 계(B)	1,200	20,643	28,733	30,737	192,368	273,681	
	신 규	1. 수산물수입관세	-	-	4,645	4,645	4,645	13,935
		2. IUU 위반 공매처분금	-	2,000	2,000	2,000	2,000	8,000
		3. 불법어업 담보금	-	17,443	19,187	21,106	23,217	80,953
		4. 유어낚시자원부담금	-	-	-	-	5,561	5,561
		5. FTA기금 전입금	-	-	-	-	80,000	80,000
		6. 감척어선 매각대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7.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	-	-	-	73,870	73,870
8. 농특세 확대		-	-	1,701	1,786	1,875	5,362	
지 출	합 계	69,282	91,135	109,276	111,686	113,998	495,377	
	경상사업	64,236	84,016	99,930	100,090	100,160	448,432	
	기금운영비	1,458	1,687	1,742	1,819	1,889	8,595	
	공자기금차입금이자	3,588	5,432	7,604	9,777	11,949	38,350	
기말자산 합계		955,771	1,021,923	1,079,312	1,145,246	1,384,776	512,276	
순자산		853,771	868,923	875,312	890,246	1,078,776	257,276	
부 채		102,000	153,000	204,000	255,000	306,000	255,000	

- 수산발전기금은 그 탄생이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우리 수산업계가 대단히 어려울 때 설립되었고, 그 재원 또한 매우 미약하였음
- 그러나 현재는 수산정책 및 수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성장하였음
- 반면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수산환경에 부응하면서 기금이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 특히 수산발전기금사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사업체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발기금의 재원확충은 더욱 절실한 상황임
  - 즉, 특화된 수발기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새로이 개발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기금의 재원 확충은 필요함
- 이상의 수발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비전을 “미래 신성장 수산업동력 원천”으로 제시하고, “재원 확보를 통한 기금 안정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기금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 수산발전기금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수발기금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 확보
  - WTO/DDA, FTA 등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 수산업 경쟁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원 확보

- 이상의 비전, 목표 및 3대 전략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발기금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들을 조사·분석하였고, 8개의 신규 재원을 수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시하였음
  - 수발기금 특화 재원 확보 : 유어낚시자원부담금, 수산자원이용 부담금 및 농특세 확대
  - FTA등 시장개방 대응 기금 확보 : 수산물 수입관세와 FTA기금 전입금
  - 수산업 경쟁력 실현 재원 확보 : IUU 위반 공매처분금, 불법어업 담보금, 감척어선 매각대금
- 제시된 신규재원을 기금화하는 방안으로서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기금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낙관론, 보통, 그리고 비관론으로 구분하여 기금의 규모를 추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8개 재원과 이를 확보하는 전략은 향후 정부나 수발기금사무국에서 추진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재원규모는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추정한 값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함
  - 각 재원별로 제시된 확보방안 또한 추진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수발기금 재원 확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부서 또는 기금사무국만의 임무가 아님
  - 수발기금은 우리나라 미래 수산업이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관계는 물론 업계와 학계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할 과제인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발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산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는 바임
  - 즉 관계, 학계, 업계 및 언론계를 아우르는 추진단을 조직하여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 및 일반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강종호 외, 「우리나라 낚시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국무총리실 등,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2011.12.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준치평가보고서」, 2007.5.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준치평가보고서」, 2010.5.
- 김상현, “기금제도의 사회적 후생효과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2005.
- 김수성,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9.6.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2012.1.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
- 류정곤 외, 「수산발전기금의 사업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3.
- 원구환 외,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 임상호, “문예진흥기금의 국제 비교와 재원조달방안”, 「재정정책론집」, 2002.2.
- 정명생 외, 「수산발전기금의 중장기 발전 방향」, 2005.10.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수산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산발전기금 발전방안 수립」, 2009.4.
- 황의식 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농안기금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2.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http://www.fips.go.kr))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http://www.moleg.go.kr))
-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홈페이지([www.susanfund.com](http://www.susanfund.com))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http://www.at.or.kr))
- 축산발전기금 사무국 홈페이지([www.ldf.or.kr](http://www.ldf.or.kr))
-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http://epsis.kpx.or.kr/))